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改編方向

序 言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國際租稅調整에 關한 法律을 발표하였다. 동법의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란, 자국의 거주자가 경과세국에 해당하는 특정국가에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함으로써 자국에서의 납세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회사의 未分配留保所得을 자국거주자의 배당으로 간주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 기업의 경제적 활동의 상당 부분은 國際貿易이나 海外投資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租稅負擔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국제적 노력이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조세회피의 전형적인 형태 중의 하나가, 외국법인의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착안하여 경과세국과 같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자기가 지배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곳에 사업활동의 명목상의 중심지를 둠으로써 본국의 과세를 피하거나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시도이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책세제로서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시행은 歐美 各國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는바, 1937년에 외국 동족회사(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에 대한 미국의 과세 제도가 그 효시를 이루었고 1962년에 미국의 Subpart F입법으로 미국의 납세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외국회사에 대한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등에 대한 납세지연을 완전히 폐지시키는 법안이 성립하게 되었

다. 이후 독일(1972년), 캐나다(1976년), 일본(1978년), 프랑스(1980년), 영국(1984년) 등에서 잇달아 경과세국 관련 세제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OECD 가입과 함께 자본교류의 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따라서 國際租稅調整에 關한 法律에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비 및 과소자본규제제도와 함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時宜適切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만, 1997년 1월 1일부터의 輕課稅國 課稅制度의 시행에 앞서서 이 제도의 각 규정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체제인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裕燦 專門研究委員의 집필로 완성되었다. 저자는 본 보고서에서 輕課稅國 課稅制度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海外直接投資의 움직임에는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경과세국 과세제도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저자는 法制度的인 측면과 國際租稅 이론상의 문제점들에 관하여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원의 安鍾錫 博士, 재정경제원 국제조세과 李京根 書記官,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자료정리 및 원고정리에 힘써 준 본 연구원의 康嫺婷 研究員, 崔祉香 研究助員과 出版팀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저자의 個人的인 見解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1996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I. 序 論	9
II. 輕課稅國을 利用한 企業의 租稅回避 形態와 輕課稅國의 類型	12
1. 輕課稅國을 利用한 企業의 課稅移延	12
2. 輕課稅國을 利用한 租稅回避 形態	15
3. 輕課稅國 國家의 類型	22
III. 輕課稅國을 利用한 企業의 租稅回避規模 推計	25
1. 課稅移延을 통한 租稅回避效果 推計	25
2.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國家 投資現況	32
IV. 우리나라의 現行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	35
1. 租稅避難處(輕課稅國)의 定義	35
2. 適用對象 內國人的 範圍	36
3. 適用制限 規定	37
4. 配當可能 留保所得 및 配當看做金額의 算出	38
5. 實際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39
6. 課稅資料의 提出	39
V. 外國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	41
1. 캐나다	41
2. 美國	43

3. 日本	49
4. 英國	53
5. 프랑스	56
6. 獨逸	57
7. 뉴질랜드	59
8. 各國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比較	60
VI. 現行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 대한 評價와 改編方案 ...	65
1.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와 海外直接投資	65
2. 輕課稅國의 定義와 指定	68
3. 被支配 外國法人과 國內納稅義務者	77
4. 歸屬所得의 範圍	84
5. 適用除外 規定	85
6. 控除規定	87
VII. 要約 및 結論	88
〈參考文獻〉	93

表 目 次

〈表 Ⅱ-1〉輕課稅國 國家의 類型	22
〈表 Ⅲ-1〉課稅移延을 통한 輕課稅國에서의 租稅回避效果 推計(Ⅰ) ...	30
〈表 Ⅲ-2〉課稅移延을 통한 輕課稅國에서의 租稅回避效果 推計(Ⅱ) ...	31
〈表 Ⅲ-3〉課稅移延을 통한 輕課稅國에서의 租稅回避效果 推計(Ⅲ) ...	31
〈表 Ⅲ-4〉우리나라 企業의 海外投資 實績	33
〈表 Ⅲ-5〉우리나라 企業의 輕課稅國 地域 投資現況	34
〈表 Ⅴ-1〉各國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比較	62
〈表 Ⅵ-1〉業種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67
〈表 Ⅵ-2〉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 및 運營方法	71
〈表 Ⅵ-3〉各國의 輕課稅國 指定制度의 形態	75

圖 目 次

〈圖 II-1〉輕課稅國을 이용한 租稅回避效果 (I)	16
〈圖 II-2〉輕課稅國을 이용한 租稅回避效果 (II)	16

I. 序 論

납세 후의 이윤을 極大化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法人稅負擔을 가능한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租稅負擔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국제적 노력은 국제경제관계의 확대와 자원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장애물의 점진적 제거, 그리고 상존하는 각국간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상의 차이와 고객으로 하여금 법률제도상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전문가(변호사·회계사 등)의 활동에 힘입어 租稅回避現狀의 증가를 가져왔다¹⁾.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중의 하나는 tax haven과 같은 세부담이 적은 특정한 국가나 지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해외투자나 해외사업활동을 함으로써 본국에서의 租稅負擔을 최대한 遲延(tax deferral)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조세회피기회를 제공하는 tax haven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나 조세회피지, 조세도피국, 경과세국, 조세피난처 또는 조세천국 등으로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 중 輕課稅國이 가장 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가치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경과세국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低率課稅 혹은 기타 특수한 혜택의 제공으로 다

1) 姜東求, 『우리나라 法人稅 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國際課稅 分野를 中心으로－』, 韓國租稅研究院, 1995. 12, p. 113.

2) 그외의 다른 중요한 租稅回避 形態로는 이전가격조작, 해외현지법인에 자기자본을 제공하되 차입금으로 假裝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적기업에 의하여 租稅回避 및 租稅節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및 지역을 의미한다. 즉, 輕課稅國이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無稅 또는 低稅率의 조세체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외국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免稅하거나 低率課稅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³⁾.

다국적기업의 경과세국을 이용한 租稅回避 行爲는 탈세와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脫稅는 위법행위인 데 반하여 輕課稅國의 이용은 합법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다국적기업이 국제적 세무대책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경과세국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세계 각국이 동일한 수준의 과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천연자원 및 세입원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고율과세국으로부터 기업을 유치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고용기회를 확충하기 위하여 外國人 投資에 대하여 稅制惠澤을 부여하고자 하므로 세계 각국의 세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국제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가장 적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게 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輕課稅國의 利用은 국제적 세무대책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이는 또한 합법적인 일이지만,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자국의 기업이 조세회피 내지는 조세절감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이나 사업등록지를 경과세국으로 옮기는 행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치고 稅源確保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⁴⁾. 미국과

3) 이러한 국가 또는 지역들은 課稅上의 혜택뿐만 아니라 통화의 교환성과 안정성, 금융의 비밀보장 및 기타 외환거래상의 사유가 보장되고 있어 國際投資 및 國際金融의 중심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나라가 輕課稅國이 될 수 있으려면 특히 과중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또 국가예산이 소득세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財政形態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4) 그러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가 해외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으로부터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경과세 여부를 조사하여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OECD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에서도 경과세국에 투자되어 있는, 자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기주어들이는 소득 중 한정된 부

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경과세국을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세제(tax haven legislation)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에 통과된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에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를 포함시켜 199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구체적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序論에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輕課稅國을 利用하여 企業이 어떤 방식으로 租稅回避를 시도하고 있는지와 경과세국 국가들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의 규모를 간단한 모델을 통하여 推計해 보았다.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現行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분석해 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제Ⅵ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를 評價하고 改編方向을 제시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 전체 내용을 要約하고 結論을 도출하였다.

분에 해당되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취지는 자국기업이 제조업이나 기타 분야에서 해외에 진출하여 실제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그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영업이익에 대하여 경과세국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과세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자본의 해외진출이나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성질의 제도가 아니며 단지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등록지 이동 또는 지주회사, 금융회사 등의 설립을 통해 조세회피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II. 輕課稅國을 利用한 企業의 租稅回避 形態와 輕課稅國의 類型

1. 輕課稅國을 利用한 企業의 課稅移延

한 나라의 거주자가 그의 자산을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커짐에 따라 그 거주자가 거주지국의 과세를 피하거나 移延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등록된 법인은 법적으로 개별적인 인격체로 취급되므로 그 외국법인의 주주가 國內居住者일지라도 동 법인의 소득이 주주에게 송금되기까지는 외국법인의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거주지국의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課稅移延(tax deferral)이라고 하며, 외국에 등록된 법인의 소득이 법인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거나 과세부담이 미약하다면 과세이연으로 인하여 그러한 외국법인에서의 소득이 국내법인에서의 소득보다 상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課稅移延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 하에 가능한 것이다. 첫째, 외국소득에 대한 居住地國의 과세가 있어야 한다. 외국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 非課稅하는 外國所得 免稅制度下에서는 이러한 과세이연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외국자본의 源泉地國(host country)에서의 과세가 거주지국(home country)에서의 과세보다 가벼워야 한다. 그리고 셋째, 투자 자본으로부터의 소득이 원천지국에 유보되고 거주지국의 주주에게 분배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이연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① 외국소득규모 ②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의 유효세율 차이 ③ 과세이연 기간 ④ 이자율 등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상이한 과세제도로 인한 과세이연의 효과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평가와 否定的인 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다. 과세이연에 대한 肯定的인 평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과세이연으로 인하여 야기된 海外投資의 증가는 전세계소득(world income)을 증가시키고 마찬가지로 국내소득(domestic income), 성장, 고용과 稅收增大效果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세이연은 모든 일반적인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한 없는 조세지원제도로써 해외투자를 誘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⁵⁾. 여러 국가들에서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정책수단들은 이러한 투자로부터의 소득이 투자자의 거주지국에서 다시 과세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며 단지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것을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도록 하는 정도의 효과밖에는 없다.

과세이연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否定的인 논리는 과세이연이 자본수출의 中立性(capital export neutrality)⁶⁾을 해친다는 것이다. 즉 투자지역에 관계 없이 같은 有效稅率로 과세되어야만 조세지원제도로 인한 효율성왜곡을 피할 수 있는데 과세이연으로 경제적 혜택이 기대될 경우 그외의 다른 조건이 비슷한 곳보다는 과세이연이 가능한 곳으로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단순히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의 한 계열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꾸밈으로써 쉽게 租稅回避를 할 수 있다는 것도 課稅移延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이다.

과세이연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는 별도로 기업이 개별국가들의 조세제도의 격차로 인하여 과세이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과세이연에 대한 기업들의 혜택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5) OECD, CFA, Working Party No. 2,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Legislation*, 1995, pp. 9~10.

6) 자본수출에 대한 중립성 및 자본수입에 대한 중립성 등의 개념에 관하여는 金裕燦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의 現況 및 改編方案(1994)』의 제 V 장을 참고할 수 있다.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 가지 극단적인 방법은 外國所得을 완전히 免稅하는 것이며 다른 극단적 방법은 과세이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외국소득이 국내과세에서 제외된다면 과세이연의 개념은 성립근거가 없다. 유럽의 일부국가들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外國法人으로부터의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居住地國課稅를 免除하고 있으나 그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면세하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의 모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課稅하도록 되어 있다⁷⁾. 그러나 이러한 외국소득 면세는 특히 외국에서 저율로 과세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세이연에 반대하는 다른 쪽 극단에서 있는 것이 모든 종류의 해외 투자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輕課稅國 혹은 피지배 외국법인 관련 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이며 이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외환규제나 조세조약에서 규정할 수 있는 濫用防止規定(antiabuse clause) 등의 법적 원칙과 이전가격과세제도 및 과세이연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를 들 수 있다⁸⁾.

7) 金裕燦,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的 現況 및 改編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pp. 48~50.

8) 과세이연을 어떠한 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데에는 당연히 의견의 차이가 많고 개별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차원의 선택을 하고 있다. 우선 발생이윤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과세이연 기간이나 소득의 종류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다 (제Ⅳ장 외국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 참조).

2. 輕課稅國을 利用한 租稅回避 形態

다국적기업이 경과세국을 이용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업 전체로서의 租稅負擔을 최소화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外換規制를 피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들이 경과세국을 이용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⁹⁾.

가. 持株會社의 設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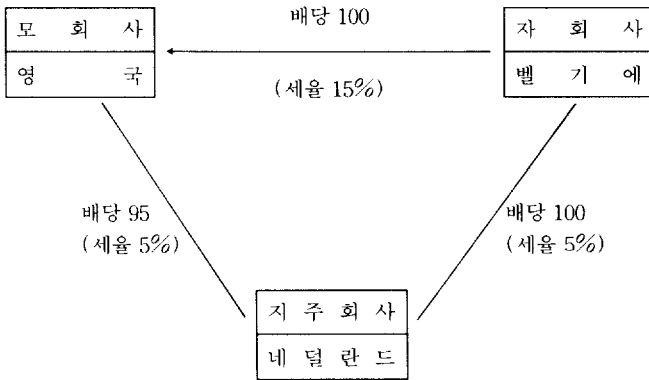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가장 유리하게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주회사에 배당을 집중시킴으로써 배당에 대한 源泉所得稅額 負擔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적합한 경과세국으로는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無稅國(tax paradise)에 해당하는 국가에 지주회사의 설립이 집중되고 있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부세국에서는 당연히 지주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나 배당을 지급하는 자회사의 소재지국과 무세국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자회사의 소재지국이 배당을 지급할 때에 國內法上 고세율로 배당에 대하여 源泉徵收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과세국에 있는 지주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의 租稅回避效果를 예시하면 [圖 II-1]과 같다.

9) 李庸燮, 『國際租稅』, 稅經社, 1996. pp. 687~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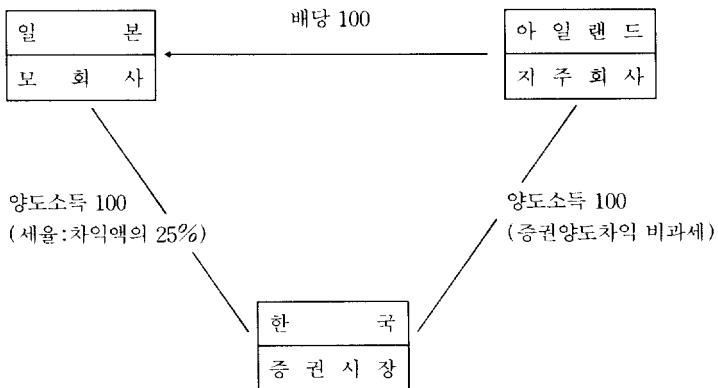
[圖 II - 1] 輕課稅國을 利用한 租稅回避效果 (I)



영국에 있는 모회사가 벨기에의 자회사로부터 배당 100을 直接 수취하는 경우에는 영·벨 조세조약에 의거 배당액의 15%가 원천징수되어 總稅負擔은 15가 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배당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9.75[(100 \times 5\%) + (95 \times 5\%)]$ 가 총세부담이 된다.

일본이 輕課稅國인 아일랜드의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증권투자를 할 경우의 조세회피효과를 예시하면 [圖 II - 2]과 같다.

[圖 II - 2] 輕課稅國을 利用한 租稅回避效果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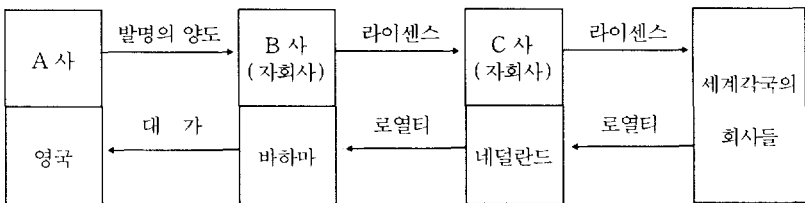
일본에 있는 모회사가 한국의 증권시장에 投資를 할 경우 양도차익의 25%나 지급액의 10% 중 적은 쪽으로 과세한다. 양도차익의 25%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 100에 대한 세부담은 25가 된다. 그러나 일본의 모회사가 아일랜드의 지주회사를 통해서 한국의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서 아일랜드로 지급되는 증권양도차익은 한국에서 비과세되며 또 일·아일랜드 조세조약에 의거하여 아일랜드에서 일본으로 지급되는 배당도 아일랜드에서 非課稅되므로 세부담은 없다. 아일랜드에서는 비거주자의 소득 중에 그 원천이 아일랜드에 있는 소득만 과세대상이다.

나. 銀行計座의 利用

경과세국에서 전혀 事業活動을 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그 나라에 있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利子를 수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의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경과세국으로는 버뮤다·케이만군도·네덜란드령 안틸레스·리히텐슈타인·파나마·뉴헤브리데스가 있다.

다. 無形資產의 利用

다국적기업이 세계적으로 이용가능한 무형자산(노하우·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을 개발한 경우 다음과 같이 輕課稅國을 이용하면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기술을 개발한 영국의 A사는 회사설립 절차가 극히 간단하며 외환 관리가 자유로운 無稅國인 바하마의 자회사(B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발명기술 그 자체를 讓渡한다. 이를 통하여 동 다국적기업은 세부담이 적은 바하마의 자회사 B에서 많은 소득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영국의 과세를 피하고 다국적기업 전체의 利潤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발명기술을 양도받은 바하마의 B사는 미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 등 많은 국가에 특허신청을 하고 특허를 취득한다. 또 B사는 세계 각국의 회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상 유리한 네덜란드에 자회사(C)를 설립하고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다. 이 C사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미국 등의 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허용하고 B사에 라이선스료를 지급한다¹⁰⁾.

라. 販賣會社의 設立

다국적기업은 輕課稅國에 基地會社(base company, tax haven company)를 설립하고, 타지역에 있는 관계회사의 이윤을 동 기지회사에 이전시키고 동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동 경과세국 또는 외국에 재투자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최소화한다. 다음의 예는 다국적기업이 輕課稅國에 판매자회사를 설치하고 租稅를 回避하는 경우이다.

한국의 갑회사가 미국에 원가 500달러의 상품을 1,500달러에 판매하는 경우에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느냐 또는 경과세국에 있

10) 위 사례에서 과세문제는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첫째, A사는 발명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영국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과세액은 매우 적다. 둘째, C사가 수령하는 사용료 소득은 네덜란드에서 저율(3~4% 수준)과세된다. 이는 네덜란드가 많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C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원천소득세는 대체로 비과세되며, 또 네덜란드 자회사가 타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사용료 소득을 모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원천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B사가 받는 사용료는 네덜란드에서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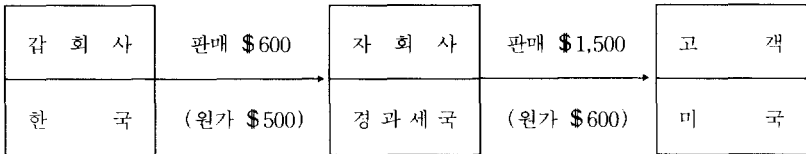
는 자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 輕課稅國을 利用하지 않는 境遇



이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과세소득은 각각 500달러로서 한국과 미국에서 과세된다.

2) 輕課稅國을 利用하는 境遇



갑회사가 輕課稅國에 설립한 자회사에 600달러에 판매하고 동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고객에게 1,500달러에 판매한다면, 갑회사의 이익 100달러만이 한국에서 과세되고 자회사의 순소득인 900달러는 경과세국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免稅되는 것이다. 이 경우 경과세국에 있는 자회사는 동 이윤을 한국에 있는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채투자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거나 移延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 金融會社의 設立

다국적기업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나 룩셈부르크와 같은 경과세국에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동 회사로 하여금 자금을 빌리게 하거나 사채를 받

행하게 함으로써 자금제공자의 利子所得에 대한 원천세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起債費用을 節減할 수 있다.

경과세국이 금융중심지로서 이용되는 것은 利子支給에 대하여 免稅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자회사(international finance subsidiaries)를 설립하여 당해 기업그룹이 필요로 하는 다액의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 海運會社의 設立

해운사업의 輕課稅國으로서는 전통적으로 파나마·리베리아·그리스가 유명하다. 이들 국가들이 경과세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한 이유는 우선 이들 나라에서는 선적의 등록과 그 이동이 용이하고 특히 등록료가 싸다는 것, 海運業에 대하여 면세하거나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 그리고 외국인 선원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사. 銀行

만일 은행이 輕課稅國 內의 지점을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주지국 내에서 전세계소득이 과세된다면 경과세국 내의 支店의 활동을 통하여 은행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경과세국 내의 자회사를 이용한다면 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자회사가 이윤을 모회사로 분배할 때까지 移延된다.

아. 用役活動

경과세국 내에 소재한 법인은 여러 가지 형태의 用役의 제공으로부터 소득을 도출해 낼 수 있다¹¹⁾. 경과세국 내 법인은 예술, 운동경기, 다른 직업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모회사나 자회사가 그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할 자본설비를 리스할 수 있다. 또 輕課稅國 內 法人이 모기업에 다양한 경영용역을 제공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더욱이 용역이 소수의 개인 숙련가에 의존하는 경우 경과세국 내의 회사에 고용된 이러한 개인에 의해 상당한 과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규모회사를 輕課稅國에 설립함으로써 거주지국의 과세를 回避할 수 있다.

자. 信託會社

英美法 概念에서 신탁이란 자산의 수익에 대한 소유와 그 지배의 분리를 의미한다. 이때 피신탁인은 신탁자산의 법정 소유자이나 신탁인에게 수익을 유지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輕課稅國에서의 신탁제도는 본질적으로 영국과 동일하다. 그러한 신탁제도는 설립하기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고 특정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 내용이 신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기 쉽다. 고세율국가의 거주자에 의해 경과세국에 설립된 신탁회사는 고세율국가의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신탁회사의 소득이 고세율국가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¹¹⁾.

11) 이와 같은 용역의 이용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B. J. Arnold, "The Taxation of CFC: An International Comparison," *Canadian Tax Paper*, No. 78, Toronto, 1986.

3. 輕課稅國 國家의 類型

경과세국 국가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表 II - 1〉 輕課稅國 國家의 類型

유형	내용	지역 또는 국가
제1유형 : 무세국 (tax paradise)	전형적인 경과세국으로서 직접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가 없는 지역 또는 국가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군도, 나우루, 뉴헤브리데스, 터크스 및 카이코스, 덴마크령 그린란드, 뉴칼레도니아, 세인트피에르, 미겔론, 소말리아
제2유형 : 저세율국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과세하거나 또는 저세율로 과세하는 지역 또는 국가, 특히 해외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세혜택 부여	사이프러스, 바레인, 이스라엘, 자마이카, 모나코, 레바논, 마카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싱가포르*, 스위스*, 지브롤타, 안티구아, 바베이도스, 안구트라, 영령 버진제도, 캄피온, 영령 차넬제도, 만지저 군도, 세인트헬레나, 몬트세라트, 세인트빈센트, 사르크, 스파이츠베르겐, 리히텐슈타인
제3유형 : 국외소득 면세국 (tax shelters)	일반적으로 정상과세를 하나 해외원천소득에 대해서 면세하는 지역 또는 국가	코스타리카, 홍콩, 리베리아, 파나마, 말레이시아*
제4유형 : (tax resorts)	일반적으로 정상과세를 하나 특별한 경우(예: 지주회사 또는 특정사업활동)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또는 국가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필리핀*, 영국*

註 : 1. 제1유형과 제2유형에 해당되는 경과세국은 대부분 조그마한 섬이나 식민지(대부분 영국의 식민지)로서 금융시장에 의하여 영위되는 지역 또는 국가들임.

2. *는 1996년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를 함함.

資料 : 李庸燮, 『國際租稅』, 稅經社, 1996.

가. 無稅國(tax paradise)

개인소득세·법인소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세·관세·인지세만이 부분적으로 課稅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들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輕課稅國 國家들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세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우리나라와도 租稅條約 關係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회사설립이 비교적 용이하여 은행·신탁·보험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의 설립을 위한 장소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나. 低稅率國

소득 또는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가 이 범주에 속한다. 이 유형의 국가들은 배당에 대한 원천세를 免除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주회사, 투자회사, 국제금융자회사의 설립에 널리 이용된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의 경우 국내법상 일반세율은 32~39%(15%의 부가세 별도)로서 낮지 않으나, 주요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2~3%로 低率課稅하며 양도소득세는 免除하는 등 과세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경과세국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 國外所得 免稅國(tax shelters)

일반세율 자체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특별히 낮지 않으나 海外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나라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예로서 홍콩은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16.5%로 과세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의 거점으로서 해외원천소득을 非課稅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편의에 있어서도 매우 뛰어나 외국회사들이 신탁

회사·지주회사의 설립지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리베리아·파나마는 해운업의 경과세국으로서 유명하다.

라. 特定形態 會社나 事業에 特惠를 주는 國家(tax resorts)

일반적으로 정상과세를 하지만 특정형태의 회사나 사업활동에 세제상 特別優待 措置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룩셈부르크·네덜란드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지주회사에 대하여 세법상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금융거래를 위한 경과세국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의 법인소득세의 일반세율은 20~40%로 상당히 높으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직접세 및 간접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매년 발행된 주식가액의 0.2%만을 과세한다. 네덜란드 역시 법인소득세의 세율은 고율이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免除하고 있다.

Ⅲ. 輕課稅國을 利用한 企業의 租稅回避規模 推計

1. 課稅移延을 통한 租稅回避效果 推計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 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 課稅移延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租稅回避效果를 다음과 같이 수량화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K : 투자규모

T : 세율

r : 세전 투자수익률

i : 시장이자율

Z : 투자수익유보율

을 의미하고 하첨자 A 는 거주지국(home country), B 는 원천지국(host country)을 나타낸다.

A 국과 B 국에서의 투자자의 세부담의 합 T_B 는

$$T_B = K \cdot r_B \cdot T_B + K \cdot r_B (1-Z)(T_A - T_B) \text{이다.}$$

여기서 $K \cdot r_B \cdot T_B$ 는 원천지국의 세부담이며 $K \cdot r_B (1-Z)(T_A - T_B)$ 는 거주지국에서 외국세액공제¹³⁾를 허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이때 여기에서 원천지국을 경과세국으로 가정한다면 $T_B < T_A$ 인 경우, 즉 완전세액공제 가능상태(deficit credit position)

가 일반적이며 외국납부세액이 외국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인 불완전세액공제 상태(excess credit position), 즉 $T_B > T_A$ 인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다.

위의 경우가 과세연도 t기의 세부담을 나타낸다고 보면 다음해인 t+1기의 투자자본은 t기의 투자자본 K와 t기의 유보소득이 되므로

$$K + K \cdot r_B(1 - T_B) \cdot Z = K\{1 + r_B(1 - T_B) \cdot Z\}$$

세전 투자수익률 r_B 가 투자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감가상각을 감안한 개념이라고 가정하면

$$TB_{t+1} = K\{1 + r_B(1 - T_B) \cdot Z\} \{r_B T_B + r_B(1 - Z)(T_A - T_B)\}$$

$$TB_{t+2} = K\{1 + r_B(1 - T_B) \cdot Z\}^2 \{r_B T_B + r_B(1 - Z)(T_A - T_B)\}$$

⋮

$$TB_{t+n} = K\{1 + r_B(1 - T_B) \cdot Z\}^n \{r_B T_B + r_B(1 - Z)(T_A - T_B)\}$$

된다.

- 13) 外國稅額控除制度는 투자자의 외국원천소득에 대해서 원천지국이 부과한 세액을 거주지국의 정부가 투자자의 과세부담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외국소득면제제도와 외국세액공제제도의 차이는, 전자가 소득 그 자체에 착안하여 외국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제도인 반면, 후자는 소득에 과세될 조세에 착안하여 과세권을 유보하면서 실제적인 세부담 면에서 조정하려는 제도라는 점에 있다. 외국세액공제제도에는 거주지국이 외국에서 납부한 투자자의 세액을 자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전액공제하는 完全稅額控除方法(full credit)과, 당기의 법인세액에 그 전세계소득에 대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인정해 주는 동상세액공제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외국소득을 발생국가별로 과세하느냐 합산하여 계산하느냐에 따라 國別限度制(per country limitation)와 一括限度制(overall country limitation)로 구분된다.

각기의 납세자의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의 세부담의 합 T_B , $T_{B,t+1}, \dots, T_{B,t+n}$ 을 t 기의 현재가치로 디스카운트하기 위하여 이자율 i 를 사용하면 각기의 납세자 세부담의 t 기의 現在價値 $DTB_{t+1}, \dots, DTB_{t+n}$ 은

$$DTB_{t+1} = K(1+i)^{-1} \{1+r_B(1-T_B) \cdot Z\} \{r_B T_B + r_B(1-Z)(T_A - T_B)\}$$

$$DTB_{t+2} = K(1+i)^{-2} \{1+r_B(1-T_B) \cdot Z\}^2 \{r_B T_B + r_B(1-Z)(T_A - T_B)\}$$

⋮

$$DTB_{t+n} = K(1+i)^{-n} \{1+r_B(1-T_B) \cdot Z\}^n \{r_B T_B + r_B(1-Z)(T_A - T_B)\}$$

가 된다.

이때 세부담의 합 $\sum_{k=1}^{k=n} DTB_{t+k} =$

$$\frac{[K(1+i)^{-1}(1+r_B(1-T_B)Z)(r_B T_B + r_B(1-Z)(T_A - T_B))](1 - (1+i)^{-n}(1+r_B(1-T_B)Z)^n)}{1 - (1+i)^{-1}(1+r_B(1-T_B)Z)}$$

이때 Z 즉, 투자수익유보율을 0, 0.5, 1의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0인 경우는 유보 없이 모든 수익을 거주지국으로 송금하여 해마다 과세하여 과세이연효과가 없는 경우이고 1인 경우는 모두 유보하여 課稅移延效果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0.5는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Z = 0$ 이면

$$\sum DTB_{z=0} = \frac{K(1+i)^{-1}(r_B T_A)(1 - (1+i)^{-n})}{1 - (1+i)^{-1}}$$

$Z = 1$ 이면

$$\begin{aligned} \sum DTB_{z=1} = & \\ & \frac{K(1+i)^{-1}(1+r_B(1-T_B))r_B T_B(1-(1+i)^{-n}(1+r_B(1-T_B))^n)}{1-(1+i)^{-1}(1+r_B(1-T_B))} \end{aligned}$$

$Z = 0.5$ 이면

$$\begin{aligned} \sum DTB_{z=0.5} = & \\ & \frac{K(1+i)^{-1}(1+0.5 \cdot r_B(1-T_B))(r_B T_B + 0.5 \cdot r_B(T_A - T_B))}{1-(1+i)^{-1}(1+0.5 \cdot r_B(1-T_B))} \\ & \cdot (1-(1+i)^{-n}(1+0.5 \cdot r_B(1-T_B)))^n \end{aligned}$$

이때 조세회피효과 T_A 는 자회사가 소득의 일부를 모회사로 송금하지 않고 유보하더라도 모회사의 거주지국에서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의 세부담 T_B' 의 현재가치의 합인 $\sum DTB'$ 와 $\sum DTB$ 의 차이에 해당한다.

$$TB'_{t+1} = K\{1+r_B(1-T_B) \cdot Z\} \{r_B T_B + r_B(T_A - T_B)\}$$

$$TB'_{t+2} = K\{1+r_B(1-T_B) \cdot Z\}^2 \cdot r_B T_A$$

⋮

$$TB'_{t+n} = K\{1+r_B(1-T_B) \cdot Z\}^n (r_B T_A) \text{가 된다.}$$

따라서

$$DTB'_{t+1} = K(1+i)^{-1} \{1+r_B(1-T_B) \cdot Z\} \cdot r_B T_A$$

$$DTB'_{t+2} = K(1+i)^{-2} \{1+r_B(1-T_B) \cdot Z\}^2 \cdot r_B T_A$$

⋮

$$DTB'_{t+n} = K(1+i)^{-n} \{1+r_B(1-T_B) \cdot Z\}^n \cdot (r_B \cdot T_A) \text{가 된다.}$$

따라서

$$\sum DTB' = \frac{K(1+i)^{-1}(1+r_B(1-T_B)Z)r_B T_A(1-(1+i)^{-n}(1+r_B(1-T_B)Z)^n)}{1-(1+i)^{-1}(1+r_B(1-T_B)Z)}$$

이 된다.

Z=0이면

$$\sum DTB'_{z=0} = \frac{(K(1+i)^{-1}r_B T_A)(1-(1+i)^{-n})}{1-(1+i)^{-1}}$$

Z=1이면

$$\sum DTB'_{z=1} = \frac{K(1+i)^{-1}(1+r_B(1-T_B))r_B T_A(1-(1+i)^{-n}(1+r_B(1-T_B))^n)}{1-(1+i)^{-1}(1+r_B(1-T_B))}$$

Z=0.5이면

$$\sum DTB'_{z=0.5} = \frac{K(1+i)^{-1}(1+0.5 \cdot r_B(1-T_B))r_B T_A(1-(1+i)^{-n}(1+0.5 \cdot r_B(1-T_B))^n)}{1-(1+i)^{-1}(1+0.5 \cdot r_B(1-T_B))}$$

따라서

$$\begin{aligned} TA_{z=0.5} &= \sum DTB'_{z=0.5} - \sum DTB_{z=0.5} = \\ &= \frac{K(1+i)^{-1}(1+0.5 \cdot r_B(1-T_B))r_B T_A(1-(1+i)^{-n}(1+0.5 \cdot r_B(1-T_B))^n)}{1-(1+i)^{-1}(1+0.5 \cdot r_B(1-T_B))} \\ &\quad - \frac{K(1+i)^{-1}(1+0.5 \cdot r_B(1-T_B))(r_B T_B + 0.5 \cdot r_B(T_A - T_B))}{1-(1+i)^{-1}(1+0.5 \cdot r_B(1-T_B))} \\ &\quad \cdot (1-(1+i)^{-n}(1+0.5 \cdot r_B(1-T_B)))^n \end{aligned}$$

$$TA_{z=1} = \sum DTB'_{z=1} - \sum DTB_{z=1} =$$

$$\frac{K(1+i)^{-1}(1+r_B(1-T_B))r_B T_A(1-(1+i)^{-n}(1+r_B(1-T_B))^n)}{1-(1+i)^{-1}(1+r_B(1-T_B))}$$

$$\frac{(K(1+i)^{-1}(1+r_B(1-T_B))r_B T_B)(1-(1+i)^{-n}(1+r_B(1-T_B))^n)}{1-(1+i)^{-1}(1+r_B(1-T_B))}$$

$TA_{z=0.5}$ 와 $TA_{z=1}$ 인 경우에 $K=1$, $T_A=0.3$, $T_B=0.1$ 이라고 가정하고 $r_B=0.1, 0.15, 0.2$ 일 때 시장이자율(i)이 0.06, 0.08, 0.1, 0.12일 경우와 과세이연기간(n)이 각각 5, 10, 20, 50년일 경우로 나누어 租稅回避效果를 추계해 보면 <表 II-1>과 같다.

<表 III-1> 課稅移延을 통한 輕課稅國에서의 租稅回避效果 推計(I)

($r_B = 0.1$)

(單位: %)

		$i = 0.06$	$i = 0.08$	$i = 0.10$	$i = 0.12$
n = 5년	$TA_{z=0.5}$	4.79	4.53	4.30	4.08
	$TA_{z=1}$	10.88	10.28	9.73	9.22
n = 10년	$TA_{z=0.5}$	9.25	8.38	7.62	6.97
	$TA_{z=1}$	23.39	21.05	19.03	17.28
n = 20년	$TA_{z=0.5}$	17.28	14.41	12.19	10.45
	$TA_{z=1}$	54.32	44.13	36.39	30.45
n = 50년	$TA_{z=0.5}$	35.50	24.11	17.54	13.50
	$TA_{z=1}$	220.67	127.62	79.91	53.97

〈表 Ⅲ-2〉 課稅移延을 통한 輕課稅國에서의 租稅回避效果 推計(Ⅱ)

$$(r_B = 0.15)$$

(單位: %)

		$i = 0.06$	$i = 0.08$	$i = 0.10$	$i = 0.12$
n = 5년	$TA_{2=0.5}$	7.66	7.24	6.86	6.51
	$TA_{2=1}$	18.50	17.45	16.49	15.61
n = 10년	$TA_{2=0.5}$	15.60	14.08	12.77	11.63
	$TA_{2=1}$	44.54	38.83	35.78	32.30
n = 20년	$TA_{2=0.5}$	32.33	26.61	22.23	18.82
	$TA_{2=1}$	132.78	105.28	84.73	69.20
n = 50년	$TA_{2=0.5}$	90.24	56.53	38.27	27.73
	$TA_{2=1}$	1339.94	680.02	368.52	214.49

〈表 Ⅲ-3〉 課稅移延을 통한 輕課稅國에서의 租稅回避效果 推計(Ⅲ)

$$(r_B = 0.2)$$

(單位: %)

		$i = 0.06$	$i = 0.08$	$i = 0.10$	$i = 0.12$
n = 5년	$TA_{2=0.5}$	10.88	10.28	9.73	9.23
	$TA_{2=1}$	27.91	26.29	24.81	23.45
n = 10년	$TA_{2=0.5}$	23.39	21.05	19.03	17.28
	$TA_{2=1}$	75.62	67.23	60.05	53.90
n = 20년	$TA_{2=0.5}$	54.32	44.13	36.39	30.45
	$TA_{2=1}$	296.62	230.20	181.24	144.73
n = 50년	$TA_{2=0.5}$	220.67	127.62	79.92	53.97
	$TA_{2=1}$	8346.92	3905.14	1914.87	990.36

위의 <表 Ⅲ-1>~<表 Ⅲ-3>에서 경과세국에서의 課稅移延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효과는 원천지국의 稅前 投資收益率이 높을수록, 市場利率이 낮을수록, 課稅移延 期間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投資收益 留保率이 높을수록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과세이연 기간이 5년인 경우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시장이자율, 투자 수익유보율, 그리고 투자수익률에 따라 투자규모의 4.08~27.91% 정도, 투자수익의 43~139.6% 정도로 나타났다. 또 과세이연 기간이 10년인 경우 조세회피누적효과는 투자규모의 6.97~75.62% 정도 그리고 투자수익의 76.2~378.1% 정도로 나타났다.

1995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과세국지역 투자금액이 총 3억 874만달러이므로 과세이연기간 5년 동안의 租稅回避 累積效果는 1,300만달러에서 8,600만달러에 이르며 과세이연 기간 10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2,200만달러에서 2억 3천만달러 사이로 추계할 수 있다¹⁴⁾.

2.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國家 投資現況

가. 輕課稅國 國家와의 國際去來 規模

1995년 현재 우리나라의 海外投資現況을 살펴보면 총 1,285건에 30억 5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지역에는 1,008건(78.44%)에 16억 4천만달러(53.63%), 북미지역에는 133건(10.35%)에 5억 5천만달러(17.85%)가 각각 투자되어 있다.

그리고 <表 Ⅲ-5>의 輕課稅國 直接投資現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홍콩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경과세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 대한 1995년 투자현황은 건수 및 금액에 있어서 전체 해외투자의 각각 3.89%

14) <表 Ⅲ-5>를 참조할 것.

및 10.12% 그리고 1995년 말 잔존투자 기준으로는 총 375건, 6억 500만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6.36% 및 5.1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1994년 들어서면서 투자금액면에서는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表 Ⅲ-5〉의 경과세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포르 그리고 몰타와는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과세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 이 국가들 가운데 500만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홍콩, 파나마, 버진 아일랜드,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케이만군도, 아일랜드,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이 중 1995년말 잔존투자 기준에서 살펴보면 홍콩에 대한 해외투자가 건수 및 금액면에 있어서 전체 경과세국에 대한 투자의 각각 59.5% 및 38.9%로 가장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表 Ⅲ-4〉 우리나라 企業의 海外投資 實績

(單位: 달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5년 말 잔존
금 액	11억2천만 (443)	12억1천만 (497)	12억6천만 (682)	23억5천만 (1475)	30억5천만 (1285)	118억 4천만 (5,893건)
증 가 율	16.7 (31.1)	8.1 (12.2)	4.1 (37.2)	86.5 (116.3)	30.2 (-12.9)	

註: ()안의 숫자는 투자건수를 말함.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表 Ⅲ-5〉 우리나라 企業의 輕課稅國 地域 投資現況

(單位: 件, 千달러, %)

	지역	1991		1992		1993		1994		1995		1995년말 잔존		법인세율 ³⁾
		건수 ¹⁾	금액 ²⁾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홍콩 ⁴⁾	29	40,486	47	29,968	35	29,713	43	111,801	35	85,748	223	235,423	16.5
2	파나마 ⁴⁾	5	13,780	3	9,400	1	5,857	4	13,161	1	17,425	43	66,940	30
3	코스타리카	0	400	1	2,350	1	156	0	0	1	3,297	9	11,220	20
4	사메리카	0	350	1	200	1	900	1	4,430	0	380	8	9,180	33.3
5	안틸레스	0	0	0	0	0	0	4	4,830	0	0	4	4,830	39(0,2,3,8,4,9,7)
6	버진 아일랜드	0	0	0	0	3	6,900	0	0	2	5,600	5	7,430	12
7	버뮤다	0	0	0	0	1	650	0	0	1	5	3	1,655	-
8	스위스 ⁵⁾	0	0	1	266	0	0	1	951	1	1,740	3	2,901	23.15
9	볼타 ⁵⁾	0	0	1	850	1	1,333	0	0	0	836	2	2,095	35(25)
10	케이만 군도	0	0	0	0	1	1	0	0	1	12,59	3	8,839	-
11	아일랜드 ⁵⁾	1	1,500	0	0	0	0	1	500	1	26	4	24,887	40(10)
12	네덜란드	3	687	4	8,428	3	790	6	13,597	1	158,914	17	174,097	40
13	싱가포르 ⁵⁾	10	15,226	4	6,052	9	3,822	8	3,592	6	21,687	46	54,393	27(10)
14	마카오	0	0	0	0	0	0	0	0	0	0	2	476	28
15	우루과이	0	0	1	301	1	2	1	25	0	0	1	2	30
16	리베리아	0	0	0	0	0	0	0	0	0	0	1	10	50
17	세인트빈센트	0	0	0	0	0	0	0	0	0	0	1	870	40(35,30,25)
	계	48	72,429	63	57,815	57	50,124	69	152,887	50	308,740	375	605,248	

註: 1) 허가기준임.

2) 실적기준임.

3) 상가 법인세율은 최고세율임.

4) 국외원천소득 면세국.

5) 1994년 통계치임.

6) 특정형태사업 우대.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호.

IV. 우리나라의 現行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

우리나라는 최근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였는바, 이 내용 중에 輕課稅國關聯 課稅制度를 포함시켰다¹⁵⁾.

1. 租稅避難處(輕課稅國)의 定義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 제17조에서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租稅避難處로 정의하며 여기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出資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⁶⁾.

15)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직까지는 이 법에 의거하여 과세된 바가 없다.

16) 동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를 業種, 會社形態, 所得發生場所에 관계없이 당해 외국법인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으로서 非課稅 또는 減免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동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 대하여 업종, 회사형태, 소득발생장소 등을 기준으로 관련 소득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 이상을 非課稅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동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라 함은 동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算出稅額이 당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 고 하였다.

국세청장은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동 규정 적용 除外地域 및 조건부 제외지역을 指定·告示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條件附 除外地域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소득이 지정·고시된 비과세 또는 減免對象所得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適用對象 內國人的 範圍

同法 第17條 第2項에서는 위의 배당간주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發行株式의 總數 또는 出資金額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直接 또는 間接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의 판정 중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주식이 同 他方法人の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間接所有比率로 한다. 그리고 당해 주주인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②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유비율에 당해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一方法人の 타방법인에 대한 間接所有比率로 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인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 ③ 제1호 내지 제2호의 계산방법은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이들 법인들이 주식 소유관계를 통하여 直列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3. 適用制限 規定

동법 제18조에서 ① “특정 외국법인이 租稅避難處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實質的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配當看做 課稅制度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특정 외국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¹⁷⁾과
- ②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投資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인 법인¹⁸⁾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實質的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당간주 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하는 국가와 체결한 租稅條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17) 동 시행령 제35조.

18) 동 시행령 제36조.

4. 配當可能 留保所得 및 配當看做金額의 算出

동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동법 제17조·제3항에 규정된 配當可能 留保所得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 통용되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에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동 기준이나 원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① 연결재무제표상 누적결손금.
-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는 법인소득세액.
- ③ 당해 사업연도 중에 행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의 분배금.
- ④ 당해 사업연도 중에 행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 ⑤ 상대국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적립금. 다만, 의무적립금이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또 시행령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 외국법인이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이익의 配當金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특정 외국법인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同 支拂金額은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동 시행령 제33조에서는 동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은 당해 특정 외국법인의 配當可能 留保所得에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持分比率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2항에서는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 모두를 곱하여 산출하나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개재되어 있는 법인이 소재하는 국가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동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은 위의 “2. 適用對象 內國人的 範圍”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間接所有比率 계산 방식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 출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각각의 직렬 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지분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조에서는 看做된 配當金額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益金에 算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實際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동법 제20조에서는 특정외국법인의 留保所得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配當(법인세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移越益金 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6. 課稅資料의 提出

동 시행령 제37조 1항에서는 同法 第17條 第1項의 적용대상이 되는 內國人是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

능 유보금액 산출 관련자료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또는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동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적용 제외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外國法人에 출자한 내국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또는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외국법인 출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V. 外國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

1. 캐나다

가. 被支配 外國法人의 定義

캐나다 法制度上 被支配 外國法人(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이란 외국 계열기업 중 내국인 납세자가 지배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계열기업이란 내국인 납세자가 동 기업의 지분을 1% 이상 소유하고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 기업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는 非居住外國法人을 말한다. 외국계열기업인지 被支配 外國法人의 여부는 내국인 납세자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캐나다의 경우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재지가 輕課稅國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며, 이런 뜻에서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관계 세법조항에 輕課稅國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내국인 납세자의 외국계열기업에 대한 支配與否에 대한 판정은 외국 계열기업이 ① 내국인 납세자 ② 내국인 납세자와 4명 이하의 캐나다 거주자 ③ 내국인 납세자 이외의 4명 이하의 캐나다 거주자 ④ 내국인 납세자와 독립기업간 가격원칙에 의하여 거래하지 않는 자 ⑤ 내국인 납세자와 독립기업간 가격원칙에 의하여 거래하지 않는 내국인 납세자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는 외국계열기업인지의 여부에 따른다.

나. 適用對象의 範圍

被支配 外國法人의 귀속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1)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과 수동적 자산(passive property) 으로부터의 자산소득.
- 2) 캐나다 발생위험을 커버하는 보험과 재보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3) 매출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특수관계인인 내국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 구매대리 외국계열기업의 소득.
- 4) 내국인의 부채 또는 무형자산의 저작권도 포함하는 리스계약에서 발생한 소득.
- 5) 被支配 外國法人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그외의 유사한 대체될 수 있는 투자소득 등의 자산소득, 보험 및 재보험으로부터의 소득 등.
- 6)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의해서 공제되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용역 소득.

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所得이 課稅目的上 看做 歸屬되는 國內納稅者

被支配 外國法人의 자본지분을 연말 기준 1% 이상 가지며 특수관계자와 함께 연말 기준 被支配 外國法人의 자본지분을 10% 이상 가지는 支配關係에 있는 國內 納稅者에게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라. 適用制限 規定

앞에서 말한 所得이라도 매출소득 중 국내에서 매출된 자산이 被支配 外國法人의 거주지국에서 창조되었을 경우와 被支配 外國法人의 매출액 중 90% 이상이 비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 被支配 外國法人의 프리미엄 소득 중 90% 이상이 독립기업관계인 자의 외국위험에 대한 보험에 의해 발생했을 때, 캐나다의 위험에 대한 보험에서 소

득이 발생했을 때, 被支配 外國法人의 총소득 중 90% 이상이 독립관계의 비거주자에 의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부채 또는 리스계약에서의 소득과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는 배당간주과세소득(FAPI : Foreign Accrual Property Income)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被支配 外國法人이 5명 이상의 고정직원을 고용하여 은행, 투자회사, 신용회사, 보험회사 등 투자업에 종사하거나 이 회사들의 주식 또는 물품시장의 중개자, 딜러일 경우와 특수관계 기업간의 교류를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위한 부동산개발, 자금대출, 리스 또는 생산기기의 이용권과 정보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라이선싱, 보험업에 종사할 경우도 被支配 外國法人 規定에서 제외된다.

다. 其 他

外國에서 부과된 세액은 소득계산시 합산되어 공제액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FAPI는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아닌 기타의 손실액이 합산되며 FAPI 손실액은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다. 외국계열기업 전체의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없고 다만 FAPI와 관련된 세액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후속배당(subsequent dividends)은 공제가 허용되며 또한 被支配 外國法人 주식판매에서 발생하는 후속 자본이득(subsequent capital gain)도 주식의 구입가격 조정으로 控除가 가능하다.

2. 美國

미국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법인의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납세자가 미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輕課稅國 등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하여 투자나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2년에

Supart F Rule을 채택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면 미국 다국적기업의 지배하에 일정요건을 갖춘 해외자회사의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그것이 본국에 현실적으로 배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 발생시에 미국 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미국 주주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에 의해서 설립되고 지배되는 외국법인, 즉 被支配 外國法人의 특정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재지가 輕課稅國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관계세법조항에 輕課稅國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 被支配 外國法人의 定義

被支配 外國法人이라 함은 각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주주들(미국의 시민이나 거주자, 미국의 파트너십, 법인, 신탁사 및 부동산)이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발행 주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수 또는 가액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법인을 뜻한다. 만일 외국법인이 특정한 과세연도에 있어서 계속 30일 이상 被支配 外國法人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 중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하루라도 소유하는 모든 미국 주주들은 그 被支配 外國法人의 미분배 'Subpart F'소득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適用對象의 範圍

被支配 外國法人의 특정한 소득으로서 미국 주주에게 과세되는 미처분 Subpart F소득이란 다음과 같다.

1) 미국재산에 대한 보험소득

미국 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보험 또는 재보험으로 인하여 被支配法人이 받은 보험료 등의 소득이 해당된다.

2) 외국기지회사(foreign base company) 판매소득

被支配 外國法人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구입한 동산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얻은 소득 또는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動産을 특수관계인에게 또는 特殊關係人을 위하여 판매하고 얻은 소득을 의미한다. 이 경우 被支配 外國法人은 단순한 販賣子會社로서 그 동산에 아무런 가치도 부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즉 판매되는 동산은 被支配 外國法人이 설립된 나라 또는 그 동산이 사용·소비될 나라의 외부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被支配 外國法人이 판매한 동산이 그 법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변경이 가해진 것이라면 그 동산은 그 법인에 의하여 제조, 생산된 것으로 보아 그 동산판매로부터의 소득은 subpart F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사소한 조립, 포장과 같은 활동은 실질적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외국기지회사 販賣所得을 특별취급하는 이유는 그 판매소득에 대하여 보다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제조활동과 분리하여 설립된 판매자회사의 소득의 조세이연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被支配 外國法人 소재지국의 세율이 제조지국 또는 소비지국의 실효세율 중 낮은 쪽의 90% 이상이거나 또는 5% 미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의 販賣所得은 Subpart F소득에서 제외된다.

3) 외국기지회사 용역소득

외국기지회사 용역소득이라 함은 被支配 外國法人이 그 소재지국 밖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기술적·건축적·공학적·과학적·산업적·상업적 또는 이와 유사한 用役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말한다.

또한 외국기지회사 용역소득을 특별취급하는 이유는 판매소득과 마찬가지로 용역자회사가 그 용역소득에 대한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나라에 설립된 경우에 그 소득의 租稅 移延效果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회사의 소재지국의 세율이 용역이 제공되는 국가의 실효세율의 90% 이상이거나 또는 5% 미만밖에 낮지 않은 경우, 그 회사의 용역소득은 Subpart F소득에서 제외된다.

4) 외국인적지주회사소득(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외국인적지주회사라 함은 과세연도의 총소득 중 60% 이상이 미국세법(IRC) 제553조에 규정된 다음의 수동적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회사의 총주식의 50% 이상이 5인 이하의 미국시민이나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위하여 직·간접으로 소유된 외국회사를 말한다. 외국인적지주회사 소득이란 다음의 소득을 의미한다.

- 가) 배당·이자·사용료 및 연금
- 나) 주식 또는 유가증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다) 상품의 선물거래에 의한 소득
- 라) 인적용역의 제공계약에 의해 수취하는 소득(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됨)
- 마) 법인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
- 바) 임대료

5) 외국기지회사의 해운소득

항공기 또는 선박을 국외에 운항함으로써 얻는 소득과 이와 관련된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항공기 등의 賣却所得도 포함된다.

6) 미국재산에 투자된 소득

被支配 外國法人이 미국재산에 투자한 금액의 증가액은 Subpart F 소득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7) 석유·가스회사의 비채굴소득

석유·가스 및 제1차 가공품에 대한 정제 및 운송 등에 관련된 소득을 의미한다.

8)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로부터 생긴 소득

다. 適用制限 規定

외국기지회사의 소득은 판매소득, 용역소득, 해운소득 및 외국인적지 주회사 소득 4개의 범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소득의 합산과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例外가 있다.

1) 10~70% 원칙

被支配 外國法人의 외국기지회사 소득이 총소득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체의 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않고 Subpart F 소득이 총소득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전 소득이 외국기지회사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기지회사 소득과 위험소득의 합계액이 被支配 外國法人의 총소득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被支配 外國法人의 모든 소득은 외국기지회사 소득 또는 보험소득으로 취급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그 합계액이 被支配 外國法人의 총소득의 5% 또는 1백만달러보다 적은 경우에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모든 소득은 외국기지회사 소득이나 위험소득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 비조세회피목적 테스트

納稅者가 재무부장관 또는 대리인에게 당해 해외자회사의 설립이나 동 자회사를 통한 거래의 주요 목적이 소득세의 실질적인 경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어떠한 소득 부분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해운소득의 특례

외국기지회사의 海運所得이 당해 해운자회사의 해운사업에 관한 적격 투자에 충당된 경우에는 그만큼 과세소득이 감축된다. 외국기지회사의 해운사업활동에 관한 적격투자라 함은 국제운수용의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자산을 말한다.

4) 미국의 위험보험에 관한 소득의 특례

미국 내의 자산, 사업활동에 관한 損害保險契約과 미국거주자의 生命保險契約에 의한 소득은 당해 보험료 수입의 5% 이하인 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課稅對象 所得의 計算

被支配 外國法人의 Subpart F소득은 원칙적으로 미국세법에 따라서 계산된다.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Subpart F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한도가 된다.

합산과세되는 소득은 합산대상 소득인 Subpart F소득에 주식비율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被支配 外國法人에 해당된 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其他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을 지분에 따라 합산과세받은 미국 주주는 被支配 外國法人이 그 소유지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중 합산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합산과세되는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이 후에 실제 배당되는 경우에는 미국 주주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이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 계산상 損金算入된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은 제한 없이 移越控除된다. 또 被支配 外國法人의 주식판매로 인한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주식의 원가로 교정하는 방향으로 공제하고 있다.

3. 日本

일본은 1978년에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에 의한 ‘조세부담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특별조치법에 ‘내국법인의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輕課稅國 對策 稅制를 도입하였다.

가. 租稅避難處의 定義

일본 國內法上 輕課稅國이라 함은 외국관계회사의 본점 소재지국 중 실효유효세율이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나라, 다시 말하면 法人稅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 존재한다 해도 그 稅率이 25% 이하인 나라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종전에는 大藏省 告示에서 경과세국을 지정하였으나, 1992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경과세국을 지정하지 않고 輕課稅國 稅制의 적용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를 개개의 자회사마다 그 세부담의 多寡에 의해 판정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종전의 大藏省 告示에서 지정된 경과세

국 41개 나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소득 경과세국 등(19개국)

안도라, 바하마, 바레인, 버뮤다, 영령 차넬제도, 영령 버진제도, 케이만제도, 지브롤타, 홍콩, 만도, 리히텐슈타인, 마카오, 나우루, 터크스 및 카이코스 제도, 안기라, 뉴칼레도니아, 바누아츠, 모나코, 몰디브

2) 국외원천소득 경과세국(5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세인트헬레나, 우루과이, 솔로몬

3) 특정 사업소득(국제사업회사, 국제금융회사, 지주회사, 투자회사 등)

의 소득 경과세국(17개국)

안티구아, 발바도스, 그레나다, 지브롤타, 자메이카,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몬트세라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세인트빈센트, 스위스, 말타, 키프러스, 쿡제도, 세이셸, 알바, 네이비스

나. 被支配 外國法人의 定義

적용대상은 위의 경과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수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뜻한다.

따라서 일본의 輕課稅國稅制는 輕課稅國이라는 특정지역에 착안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소득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미국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다. 適用制限 規定

일본의 輕課稅國稅制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므로

로 비록 輕課稅國에 소재하는 특정외국자회사라 하더라도 다음에 5개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들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특정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단위로 한다.

- 1) 그 주된 사업이 주식, 채권의 보유, 공업소유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 또는 특별한 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등 또는 저작권 등의 제공,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이외의 사업일 것
- 2) 그 본점 소재지국에서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소, 점포, 공장, 기타 고정시설을 갖고 있을 것
- 3) 그 사업의 관리, 지배 및 운영을 스스로 행하는 경우
- 4) 그 주된 사업이 도매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수운업 또는 항만 운송업이며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중 비관련자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 5) 주된 사업이 4)항의 업종이 아닐 때에는 50% 이상의 사업이 경과세국 바깥에서 수행되는 경우

라. 課稅對象所得의 計算

租稅特別措置法 제66조의 6 제1항에 의하면, 특정 외국자회사 즉 輕課稅國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갖고 있는 외국관계회사의 미처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유보금액은, 그 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¹⁹⁾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外國法人의 수익금액으로 간주하여, 그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을 포함하는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算入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1992년에는 10%였으나 그 이후로 변경되었다.

특정 외국자회사의 미처분 유보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유보금액을 내국법인에 合算課稅함에 따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상 간접외국세액공제방법에 준하여 특정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를 일본 법인의 세액으로부터 控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이 특정 외국자회사의 과세대상 유보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과세대상 유보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내국법인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내국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外國法人稅額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frac{\text{특정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text{과세대상 유보금액}} \times \frac{\text{과세대상 유보금액}}{\text{적용대상 유보금액} + \text{당기의 이익배당}}$$

마. 其他

被支配 外國法人 손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移越될 수 있고 연결회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후속배당에 대해서는 기업주주의 경우 종전 귀속소득 또는 5년 동안²⁰⁾의 귀속소득에서부터 配當이 발생할 때 그 액수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 개인주주의 경우는 3년 동안의 귀속소득에서 나온 배당을 말한다.

4. 英國

영국은 1984년도의 재정법(finance act)에서 輕課稅國을 이용하는 회사의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도입하였다.

가. 租稅避難處의 定義

영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輕課稅國에 설립한 被支配 外國法人의 미처분 소득에 대하여는 그 被支配 外國法人의 주식 중 10% 이상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영국 거주회사에 그 지분에 따라 영국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에 대하여 문제의 被支配 外國法人이 거주지국에서 납세한 법인세액이 그 소득에 대한 영국의 법인세 상당액의 4분의 3²¹⁾보다 적을 경우에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가 적용된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이익에 대한 영국의 법인세 상당액은 그 법인이 영국에 거주한다고 가정하고 일정한 조정을 통하여 산출한 被支配 外國法人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될 세액을 뜻한다.

나. 被支配 外國法人의 定義

被支配 外國法人이라 함은 영국 밖에 거주하는 회사로서 영국의 거주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되며, 연중 국내 거주자가 그 회사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한다.

21) 1993년에 재정법에 따라 1/2에서 3/4으로 인상되었다.

다. 適用制限 規定

被支配 外國法人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輕課稅國 관련 課稅制度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첫째, 당해 법인이 소득을 영국에서 輕課稅國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영국의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영국의 조세감소가 미미하거나 또는 그것이 당해 법인의 주된 거래목적이 아닌 경우.

둘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기간 중, 거주지국에 합리적으로 항구적인 시설물을 갖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 경우 被支配 外國法人은 거주지국에서 주로 회사의 활동에 종사할 적절한 인원수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며 또한 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영국 밖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被支配 外國法人의 주된 사업은 유가증권,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보유, 브로커 이외의 자격에 의한 유가증권의 거래, 리스 등의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말아야 하며 영국이나 관련자와의 상품거래 역시 안 된다. 만일 그 주된 사업이 도매업, 해운·항공업, 증권업, 은행업, 신탁업, 선물거래업 또는 보험업인 경우 관련자와의 거래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기는 수입금액은 전체 수입금액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지주회사는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와 동일한 국가에 거주하며 또한 면세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와의 거래에서 총수입금액의 90% 이상을 직접 얻거나 또는 자기가 9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지주회사로부터 얻는 경우 면세활동 기준에 해당한다.

셋째, 被支配 外國法人이 내국세입청에서 발표한 적용대상 제외국에 거주하며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내국세입청은 輕課稅國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의 명단을 두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발표하였다. 제1표는 대상 제외국 명단으로서 호주, 프랑스, 독일 및 우리나라 등 이 명단에 수록된 나라는 輕課稅國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표는 특정대상 제외국 명단으로서 룩셈부르크의 지주회사, 싱가포르의 해외재보험회사 및 해운회사 등 이 명단에 揭記하는 특정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輕課稅國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는 주소, 거소 또는 관리장소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설립지 여부를 불문하고, 만일 회사소득의 90%가 거주지국의 원천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그곳에서 과세되는 경우 그 회사는 그 거주지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넷째,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被支配 外國法人이 배당가능 이익의 50% 이상을 영국 거주자에게 배당으로서 지급하는 경우로 각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被支配 外國法人의 의결권주식의 35% 이상이 당해 회계연도 중 비관련자에 의하여 공개 보유되는 경우로 被支配 外國法人의 주식은 12개월의 회계연도 동안 輕課稅國 안에 공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거래되며 그 주식이 공인된 주식시장의 주식목록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被支配 外國法人의 주된 인사들(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 만약 5명 이상일 경우 상위 5명)이 85% 이상의 주주투표권을 소유하는 경우.

라. 課稅對象所得의 計算

被支配 外國法人이 상술한 어느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영국의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被支配 外國法人의 미처분 소득은 영국 거주회사에 그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그 被支配 外國法人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이 경우 被支配 外國法人이 거주지국에서 납부한 외국의 법인세는 물론 영국의 법인세에 대하여도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은 무제한으로 이월되며 연결회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귀속소득 납세액이 외국세액공제로 처리되어 후속 배당에 대해 세액공제가 되며 종전에 공제되지 않았던 배분소득 세액의

한도내에서 주식판매로 인한 자산소득은 과세된 귀속소득에서의 소득감액이 허용된다.

5. 프랑스

가. 租稅避難處의 定義

프랑스에서는 외국세액이 국내세액의 3분의 2보다 적을 경우에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적용시키는 것이 행정관행이며 법적 명문규정으로서는 단지 우대과세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외국법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조항만이 존재한다.

나. 被支配 外國法人의 定義

被支配 外國法人이란 회계연도 말에 국내기업이 그 회사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²²⁾하거나 1억 5천프랑에 상당하는 지분²³⁾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다. 適用制限 規定

모든 소득은 프랑스 國內稅法에 의해 과세된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이 10% 이상의 기업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被支配 外國法人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95%의 배당소

22) 1992년 9월 30일 부터 25%에서 10%로 인하되었다. 당시 존재했던 기업들은 인화된 기준의 적용을 2003년 1월 1일까지 미룰 수 있다.

23) 1992년 9월 30일 시행되었으며 당시 존재했던 기업들은 2003년 1월 1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특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러나 被支配 外國法人 사업활동이 특정국가의 우대과세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이윤증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와 수익의 50%가 현지의 제조·생산·판매 및 원자재의 구입·판매로부터 이루지는 경우는 귀속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 其他

국내세법에 의해 외국세액에 대한 稅額控除가 허용되며 이익배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과거에는 과세대상이었지만 현재는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국내기업이 계열기업간의 연결회계(consolidation)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결회계를 사용할 수 없으며 被支配 外國法人 손실액은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다. 후속배당에 대해서는 종전에 귀속되었던 액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6. 獨逸

가. 租稅避難處의 定義

被支配 外國法人 소재국가의 세율이 총소득의 30% 이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때에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輕課稅國 국가목록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한다.

나. 被支配 外國法人의 定義

被支配 外國法人을 회계연도 말에 국내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 定義하고 있으며 특정한 이민인들은 이민온 후 10년 뒤부터 내국인으로 인정된다.

다. 適用對象 範圍

被支配 法人의 소득으로는 수동적 소득과 피지배보험, 계열기업간 매매 등 계열기업간에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자산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소득이 있으며 이는 租稅條約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실질적으로 企業活動을 하는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租稅條約의 입장이지만 독일의 租稅條約에서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株主들에 대한 배당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適用制限 規定

25%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이나 세금공제액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가진 기업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한 소득(tainted income)이 被支配 外國法人 소득의 10%보다 적을 경우에는 귀속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특정한 被支配 外國法人 또는 被支配 外國法人 지분을 보유한 내국납세자에 대한 총공제액이 12만DM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마. 其他

株主는 控除와 감액 중 하나의 구제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나 만약 공제를 선택할 경우 外國稅額과 歸屬所得은 合算되어야 한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액은 5년 동안 이월될 수 있으며 연결회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배당금을 4년 동안 내왔다면 원년도에 인정되었던 귀속소득세 공제에 대한 내국세가 과세되며 주식이 4년 안에 매각된다면 원년도에 인정되었던 歸屬所得 控除에 대해 內國稅가 과세된다.

7. 뉴질랜드

가. 租稅避難處의 定義

1988년 3월에 경계국가 목록(grey list)과 혐의국가 목록(black list)이 공포되었으나 1993년 이후 경계국가 목록만이 적용되고 있다.

나. 被支配 外國法人의 定義

被支配 外國法人이란 회계연도 말에 5명 이하의 국내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所得이 課稅目的上 看做 歸屬되는 國內 納稅者

被支配 外國法人의 자본지분을 연말 기준 10% 이상 직·간접으로 가진 납세자를 말한다.

라. 歸屬所得

租稅減免 條項의 적용을 받는 경계국가 목록 국가들의 被支配 外國法人에 있어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되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모든 소득은 조세감면 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향조정되며 전기의 손실은 계상되지 않는다. 경계국가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의 被支配 外國法人의 모든 소득은 지점기준으로 계산된다.

마. 其他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은 控除된다. 그리고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액은 동일 경과세국 내에서의 被支配 外國法人의 이윤과 연결되어 손실초과액은 이월된다. 또 동일 경과세국에서 다른 被支配 外國法人 이윤과도 상쇄된다. 뉴질랜드 회사간 66%의 주식을 소유한 被支配 外國法人의 이윤과 손실은 연결회계가 인정된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한 뉴질랜드 회사가 받은 후속배당은 세액공제가 되며 被支配 外國法人의 주식판매로 인한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8. 各國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比較

개별국가들이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운영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의 형태를 보면 캐나다와 미국은 거래성격에 의한 구분에 의해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일본, 영국, 프랑스와 독일은 去來性格에 의한 區分法과 稅率比較法, 輕課稅國指定制度가 혼용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며 우리나라도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과세국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캐나다, 미국 및 뉴질랜드는 관계세법에 경과세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 반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담세율이 각각 25%, 15% 이하인 지역을 경과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居住地國에서 지급한 법인세액이 국내세액의 4분의 2와 3분의 2보다 적을 경우를, 독일은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재지국가의 세율이 총소득의 30% 이내인 경우를 경과세국으로 간주한다.

캐나다는 特殊關係者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아 납세자가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

는 외국법인을 피지배 외국법인이라고 정의한다. 미국과 일본은 議決權 있는 주식의 일정비율(각각 10%,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영국은 영국 밖에 거주하는 회사로서 국내 거주자에 의해 직·간접으로 지배되며 국내 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 및 그에 상당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피지배 외국법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프랑스는 회계연도 말에 국내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1억 5천프랑에 상당하는 지분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피지배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회계연도 말에 국내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뉴질랜드는 5명 이하의 국내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을 被支配 外國法人으로 정의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결회계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피지배 외국법인의 손실액에 대하여 5년 동안의 이월을 허용한다.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은 損失移越控除를 허용하지 않는다.

〈表 V-1〉 各國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比較

	제도의 형태			경과세국 정의	피지배 외국법인 정의	손실이월공제	귀속소득 계산방법	적용제한 규정	비고
	거래상격에 의한 구분	세율 비교법	경과세국 지정제도						
캐나다	○ ¹¹⁾			규정 없음	납세자가 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자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외국법인	외국계열기업 전체의 이익과 손실은 이월공제 불인정 ¹⁾	귀속소득 계산방법	CFC 거주지국에서 창출된 자산이 국내에서 배당시 소득 ¹⁾	외국에서 부과된 세액은 공제액으로 인정
미국	○ ¹¹⁾			규정 없음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발행주식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무제한 이월공제	Subpart F 소득 × 주식비율 × CFC 해당기간 비율	외국지회사 소득이 총 소득의 10% 미만인 경우 ¹⁾	합산과세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함
일본	○	○	○ ¹²⁾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인세율이 25% 이하인 지역	은행주식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내국법인이 직·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연결회계 불인정 5년 동안 이월	과세대상유보금액은 외국법인의 수익금액으로 간주함 ¹⁾	그 사업의 관리, 지배 및 운영을 스스로 행하는 경우 ¹⁾	
영국	○	○	○	거주지국에서 지급한 법인세액이 영국의 세액의 3/4보다 적은 경우	국외 거주 회사로서 국내 거주자에 의해 직·간접으로 지배되며 국내 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 및 자산을 소유하는 법인	무제한으로 이월 연결회계는 불인정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	경과세국으로 법인이 소득을 이동시켰으나 국내 조세 감소가 미미한 경우 ¹⁾	
프랑스	○	○	○	외국세액이 국내세액의 2/3보다 적은 경우	회계연도말에 국내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1억5천프랑에 상당하는 지분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연결회계 불인정 5년 간 이월		CFC 활동이 이윤증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¹⁾	
독일		○ ³⁾	○	CFC소재국가의 세율이 총소득의 30% 이내인 경우	회계연도 말에 국내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외국법인	연결회계 불인정 5년 간 이월		25%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은 특별규정이 적용됨	특별한 소득이 CFC소득의 10%보다 적은 경우는 귀속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뉴질랜드	○		○ ⁴⁾	규정 없음	5명 이하의 국내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연결회계 인정 손실초과액은 이월			
한국	○	○	○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과세하지 않거나 법인의 부당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지역	피지배 외국법인에 대한 정의 규정 없는 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8호 ¹²⁾ 에 '특수관계'에 대한 규정이 있음	5년 간 이월	배당간주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¹³⁾ 에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	특정외국법인이 조세과년처에 고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배당간주과세소득이 적용되지 않음	

- 註 : 1) 輕課稅國 국가목록 없음.
 2) 1992년 이전에만 해당되는 일이며, 1978년 도입 조세특별조치법 기준임.
 3) 비공식적으로 輕課稅國 국가 지정제도를 택하고 있음.
 4) 輕課稅國 국가목록으로 輕課稅國 국가 목록과 협의국가 목록이 존재하기는 하나 1993년 이후 輕課稅國 국가 목록만 적용됨.
 5) 단, FAPI (Foreign Accrual Property Income)는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아닌 기타 손실액이 합산되며 손실액은 5년 동안 이월됨.
 6) 課稅대상 유보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課稅대상 내국법인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7) 다음과 같은 소득도 課稅대상에서 제외됨.
 ① CFC 매출액 중 90% 이상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될 때 소득.
 ② CFC 소득 중 90% 이상이 외국위험보험에 의해 발생시.
 ③ CFC 소득이 5천달러 미만인 경우.
 ④ CFC 소득 중 90% 이상이 독립관계의 비거주자에게 의해 발생한 경우의 리스계약소득.
 ⑤ 5명 이상 고정직원을 고용하고 투자업에 종사할 경우.
 8) 다음과 같은 소득도 課稅대상에서 제외됨.
 ① 해외지회사의 설립목적의 세외 이익이 아님을 납세자가 재무부장관에게 입증한 경우.
 ② 외국지회사의 해운소득 중 적격투자자에 투자된 경우.
 ③ 보험계약의 소득은 보험료 수입의 5% 이하인 소득.
 9) 다음과 같은 소득도 課稅대상에서 제외됨.
 ① 그 주된 사업이 주식, 채권의 유보, 용임소유권, 기타 기술에 관한 권리 또는 특별한 기술에 의한 생산방식 등 또는 저작권 등의 제공,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이외의 사업일 것.
 ② 그 본질적 요소에 따라 주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소, 점포, 공장, 기타 고정시설을 갖고 있을 것.
 ③ 그 주된 사업이 도매업, 은행업, 운송업, 보험업, 증권업, 출판업, 신문업, 증권업, 모험업, 수운업 또는 항만 운송업이며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중 비관련자와의 거래에 시 생기는 것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0) 주된 사업이 ③항의 업종이 아닌 때에는 50% 이상의 사업이 輕課稅國 바깥에서 수행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득도 課稅대상에서 제외됨.
 ① 당해 법인의 주된 거래목적에 아닌 경우.
 ②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기간 중 거주지국에 합리적으로 항구적인 시설물을 갖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③ 피시세 외국법인이 내국세입장에서 발표한 적용대상 제외국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산업에 종사하는 피시배 외국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50% 이상을 영구 거주자에게 배당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로 각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지급됨.

⑤ 피시배 외국법인의 의결권 주식의 35% 이상이 당해 회계연도 중 비권련자에 의하여 공개보유되는 경우.

11) 수의 50%가 국내에서 제조·생산·판매 및 원자재의 구입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귀속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12) '特殊關係'라 함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細部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나. 세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쌍방간의 관계.

다.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13)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국에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에서 다음 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동 기준이나 원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① 연결재무제표상 누적결손금.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하는 법인소득세액.

③ 당해 사업연도 중에 행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의 분배금.

④ 당해 사업연도 중에 행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⑤ 상대국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적립금. 다만, 의무적립금이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資料 : Bebbington, K. J. and D. J. Hasseldine, "New Zealand: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1. 3.

Harris, P. A., "Australia: New FIF Regim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3. 11.
Magnin, E. and E. Rautalahti, "Japan: Tax Haven and Foreign Tax Credit Rules: 1992 Amendments and Their Impact on Dutch Holding Companies,"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3. 3.

Pendersen, B. M., "Denmark: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5. 10.
Viherkenttä, T., "Finland Enacts New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Tax Notes International*, 1995. 1.
OECD, CFA, Working Party No. 2,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Legislation*, 1995. 3. Paris.

VI. 現行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 대한 評價와 改編方案

1.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와 海外直接投資

제Ⅲ장의 <表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995년에는 30억 5천만달러에 달하였다. 우회수출의 목적으로 혹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유지차원에서 시도되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과도한 海外投資의 急增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선 해외직접투자와의 연관 속에서 同 制度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²⁴⁾.

지나친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국내산업의 공동화 등 惡影響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 악영향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대상 지역을 국내로 한정시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야기시키는 否定的 影響보다 더 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海外直接投資의 증가와 국내경제와의 관계에 대한 판단도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다

24) 기본적으로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궁극적으로 歸屬되게 될 국내기업에 납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의 직접투자(inbound FDI)와는 관련이 없고 다만 우리나라 자본의 해외직접투자(outbound FDI)와 관련이 있을 뿐이다.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 이외에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稅制手段으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등의 정책수단을 들 수 있다.

만 해외투자소득의 지나친 現地留保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⁵⁾.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과세제도는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를 줄이거나 해외투자소득의 지나친 현지유보를 막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도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활동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기업이 본점이나 사업등록지를 조세피난처로 옮김으로써 이루어지는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고안된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움직임에는 극히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表 VI-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분야는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除外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는 범률이 정한 특정한 사업 즉,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등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을 적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 海外投資에서 1995년의 투자금액 기준으로 10% 미만을 차지하는 무역업 분야만이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와 관련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가 해외직접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表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과세국에 투자된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海外直接投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95년의 전체 해외투자의 10% 미만인 무역업 분야의 투자 2억 9천 5백만달러 정도 가운데에서도 극히 일부

25) 韓道淑·安鍾錫,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政策의 改編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內部資料, 1996. 8. 20.

분만이 경과세국에 투자된 것이며 이들만이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表 VI-1〉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單位: 件, 千달러)

		계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기타
1980	건수	40	0	0	1	8	6	20	5
	금액	17,764	0	0	125	6,451	5,449	4,487	1,252
1981	건수	51	2	1	5	7	6	24	6
	금액	35,080	173	10,400	196	4,572	4,475	7,895	7,369
1982	건수	49	4	1	1	6	6	19	4
	금액	100,839	69,136	6,985	60	6,123	5,930	8,895	3,710
1983	건수	56	1	2	4	13	9	19	9
	금액	108,919	45,246	19,339	116	25,925	2,641	12,198	3,454
1984	건수	46	1	0	1	9	7	17	11
	금액	50,186	15,089	5,286	98	13,356	4,480	7,874	4,003
1985	건수	39	2	0	2	12	2	16	5
	금액	115,562	71,424	3,211	2,089	20,747	1,590	11,122	5,379
1986	건수	52	0	0	3	22	1	19	7
	금액	183,877	81,421	469	3,831	73,156	1,911	15,378	7,711
1987	건수	92	3	0	4	32	4	37	12
	금액	410,508	218,879	392	2,329	156,169	2,758	19,629	10,352
1988	건수	176	2	1	4	68	9	69	23
	금액	223,761	64,993	450	13,618	82,154	6,365	42,718	13,463
1989	건수	269	1	1	9	146	3	79	30
	금액	569,590	75,930	34,150	39,197	278,504	12,914	61,257	67,638
1990	건수	338	7	0	17	192	7	78	29
	금액	958,632	151,959	5,550	27,854	488,905	4,931	223,191	54,524
1991	건수	443	4	0	22	277	4	94	36
	금액	1,115,096	123,294	250	14,404	598,767	12,662	232,939	143,682
1992	건수	497	6	1	30	345	3	87	20
	금액	1,218,350	150,159	1,900	26,032	651,340	466	303,268	75,449
1993	건수	682	6	4	12	514	16	94	29
	금액	1,260,274	144,701	4,547	7,752	536,073	20,150	413,400	127,562
1994	건수	1,476	13	3	20	1,083	29	146	162
	금액	2,305,422	113,653	1,035	8,734	1,496,286	64,317	487,897	124,117
1995	건수	1,285	6	2	13	906	40	116	188
	금액	3,059,088	74,335	3,215	12,396	1,981,618	75,834	295,917	579,507

資料: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1996. 1~2.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호

2. 輕課稅國의 定義와 指定

개별국가들이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분류한다면 크게 소득구분법(transactional approach)과 세부담비교법(comparable tax approach) 그리고 輕課稅國 指定制度(jurisdictional approach)로 나눌 수 있다²⁶⁾.

소득구분법은 被支配 外國法人이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하여 초점을 두어서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재지가 輕課稅國에 해당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당연히 이러한 방식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가지는 나라에서는 輕課稅國의 정의나 輕課稅國을 지정하는 규정을 법규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세부담비교법은 被支配 外國法人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명목세액(nominal tax rate)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납부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경과세국 지정제도는 국내법으로 輕課稅國 國家들을 지정하여 被支配外國法人이 이 輕課稅國 國家들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被支配 外國法人이 위치한 국가를 함께 고려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소득구분법과 다른 점이다. 개별 국가들은 위의 세 가지 접근방법이 혼재된 형태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제17조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26) OECD, CFA, Working Party No. 2, *CFC Legislation*, 1995. 3, Paris, pp. 24~25.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정의하고 있고 또 국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제외 지역 혹은 조건부 제외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는 조세피난처 대상국가를 열거·지정하지는 않고 다만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 기준을 그 국가에 위치한 법인의 부담세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장이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 즉 무혐의국가(white list country)를 指定·告示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부담비교법과 경과세국 지정제도가 혼용된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제도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설정이 필요하다. 우선 제도의 형태 중 소득구분법, 세부담비교법 그리고 경과세국 지정제도는 각기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는 적절한 선택을 하였는가? 두번째는 우리나라 제도상에 나타난 輕課稅國 國家의 기준인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로 규정한 부담세액이 적절한 수준이며 그 기준으로 명목세율 기준과 유효세율 기준 그리고 실제납부세액 기준 중 어떤 것이 적절한가? 마지막으로는 輕課稅國 國家를 지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국가를 지정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될 것이다.

가. 制度의 形態

소득구분법은 투자지역의 경과세국 여부를 불문하고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의 성격에 초점을 두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전통적으로 輕課稅國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들도 투자자본 유인을 위하여 조세지원을 행한다는 점에서 국내 과세를 피하려는 해외진출 기업의 의도

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소득구분법은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법하에서는 납세자는 매 거래마다 외국세법과 상이한 국내법에 따른 재무상태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며 거래규모를 나타내는 외국 화폐단위는 국내 화폐단위로 환산되어야 하고 납세신고서에 관한 기록은 항상 보관되어야 한다. 이러한 납세비용 문제는 거래국가가 하나 이상인 경우에 국가간의 상이한 세법과 납세절차 그리고 언어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세부담비교법은 세율을 비교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소득구분법보다 납세비용이나 징세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나 명목세율, 유효세율 혹은 실제납부세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납세비용이나 징세비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방안으로서의 효율성도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輕課稅國 指定制度는 輕課稅國 課稅制度가 어떤 특정한 국가목록에 기초를 두고 움직여지는 제도로서 이 목록에는 輕課稅國, 非輕課稅國 혹은 특정조건과 결부된 輕課稅國 등의 국가종류가 열거될 수 있고 이 목록이 被支配 外國法人 關聯 課稅制度의 지침역할을 수행한다. 輕課稅國 指定制度는 세부담비교법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운영되면서 납세자와 과세당국에 대한 지침으로서 被支配 外國法人 課稅制度의 실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경과세국의 목록을 유지하는 것은 이들 나라에 대한 충분한 정보수집을 위한 비용측면에서, 그리고 이 목록을 매년 갱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들 나라와의 마찰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表 VI-2>와 같다.

<表 VI-2>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 및 運營方法

(單位: 百萬元)

	특 징	단 점	장 점
소득 구분법	투자지역의 경과세국 여부를 불분하고 피지배 외국법인의 소득의 성격에 초점을 두어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음.	경과세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도 투자자본유인을 위하여 조세지원을 행한다는 점에서 국내과세를 피하려는 해외진출 기업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임.
세부담 비교법	피지배 외국법인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명목세율을 비교하는 방법. -유효세율을 비교하는 방법. -실제납부세액을 비교하는 방법.	기준을 명목세율, 유효세율, 실제납부세액 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납세비용이나 징세비용이 다르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납세비용과 징세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조세회피에 대한 비교적 효율적인 대처방안임.
경과세국 지정제도	국내법에 경과세국 국가들을 지정하여 피지배 외국법인이 경과세국 국가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를 결정함.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경과세국 국가와의 마찰 가능성이 존재함.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지침역할을 하면서 경과세국 과세제도의 실현에 불확실성을 제거함.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의 節減과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가 채택하는 경과세국 지정제도적 요소 즉, 무혐의국가의 지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세부담비교법적 요소는 실제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과세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세부담비교법의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명목세율, 유효세율 혹은 실제납부

세액을 들 수 있는데, 어느 대상국가를 경과세국으로 보느냐에 관한 결정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있으나 유효세율 혹은 실제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효세율이나 실제납부세액은 個別投資者別로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부담비교법은 그 기준을 유효세율이나 실제납부세액으로 하는 경우 경과세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소득구분법처럼 개별 투자자가 본국에서보다 해외에서 경과세 대우를 받느냐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는 어느 대상국가를 조세피난처 즉 경과세국으로의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세부담비교법 중 실제납부(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어느 특정국가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현지법인 A와 B가 있다고 할 때 A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나 B의 부담세액은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피난처를 당사국의 세제가 아니라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도 관련이 되는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과세당국 입장에서 경과세국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므로 세부담비교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소득구분법처럼 개별 투자자별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나. 適正負擔稅額의 基準

세부담비교법은 투자지국에서의 被支配 外國法人의 세부담과 국내에서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명목세율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방법, 유효세율을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납부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중 실제납부세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최적의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개별기

업의 경영성과와도 관련이 되는 實際納付稅額을 경과세국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다면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하는 稅負擔比較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경과세국으로 판단하는 명목세율의 수준을 100분의 15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나 혹은 소폭 상향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199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법인의 평균유효세율은 약 27.3%²⁷⁾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에서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로 본 것은 우리나라의 평균 유효세율의 55% 정도 수준에 그 기준을 둔 것이므로 세율의 높이로 보아서 충분히 낮은 기준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有效稅率은 명목세율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비교법으로 바뀐다면 세율기준도 20% 정도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⁸⁾.

다. 輕課稅國 指定制度

輕課稅國 指定制度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 우선 輕課稅國을 지정하기만 하는 제도(designated jurisdiction approach)와 이 제도를 輕課稅國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의 연계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때 이 두 가지 종류의 방법의 법적인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경과세국 지정제도가 輕課稅國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때의 輕課稅國 목록은 단지 비공식적·행정적인 목록의 역할을 할 수도 있

27) 이는 1994년의 국내법인의 납부세액 6조 2833억원을, 법인의 총소득 24조 9987억원에서 이월결손금 1조 9612억원을 뺀 액수로 나눈 것이다.

28) 일본은 유효세율 25%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Magnin, E. and E. Rautalahti., "Japan: Tax Haven and Foreign Tax Credit Rules: 1992 Amendments and Their Impact on Dutch Holding Companies,"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3, 3, pp. 286~293).

으며 이 경우 이 목록은 수록된 어떤 특정국가의 상태에 대하여 반증이 가능한 가정으로서의 역할만을 할 뿐이다. 반대로 공식적인 목록은 법적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를 구속한다.

輕課稅國 指定制度(jurisdictional approach)를 채택하는 나라의 제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1992년 이전에는 輕課稅國을 정의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무협외국가/협외국가 목록(white/black list)이 존재하였으나(그렇게 한 지금까지의 유일한 국가) 1992년에 이를 폐지하는 대신 비교세율 테스트를 채택하였으며 輕課稅國의 행정적 목록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국은 무협외국가/경계국가 목록(white/grey list)을 만들어 목록 내의 국가에 소재하는 被支配 外國法人은(혹은 특별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면) 輕課稅國 指定制度에서 제외되는 반면 비목록국가 내의 被支配 外國法人은 비교세율 테스트에 의존한다. 스웨덴은 1993년 말까지 조세조약국과 비조세조약국 사이를 구별하는 무협외국가/경계국가 목록을 운영하였고 현재의 무협외국가/경계국가 목록은 특정 조세조약국가와 기타 국가를 구별하고 있다. 핀란드는 현재 스웨덴과 비슷한 무협외국가/경계국가 목록을 운영한다. 호주는 법적인 무협외국가 목록(white list)을 운영하는데 목록에 수록된 국가의 경우 확실한 해당소득만을, 그리고 수록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모든 해당소득을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무협외국가/협외국가 목록(white/black list)을 만들어 무협외국가 목록내의 국가에 소재하는 被支配 外國法人은 輕課稅國 課稅制度에서 제외하며 스페인은 경계국가 목록을 입법화하여 목록에 있는 국가를 반박가능한 가정으로서 輕課稅國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외 국가에는 비교세율 테스트를 적용한다. 독일과 프랑스도 경계국가 목록을 입법화하여 비목록국가는 非輕課稅國인 반면에 목록에 있는 국가는 반박가능한 가정으로서 輕課稅國임을 지정함으로써 실제로는 무협외국가/협외국가 목록을 운영하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지정국가 목록을 공표하지는 않으면서 輕課稅國 指定制度를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表 VI-3〉 各國의 輕課稅國 指定制度의 形態

	경과세국 지정제도 형태	비 고
일본 (1992년 이전)	무협의국가/협의국가 목록	현재는 경과세국 지정제도를 택하지 않고 있음.
영국	무협의국가/경계국가 목록	비목록국가 내의 피지배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교세율테스트에 의존함.
스웨덴	무협의국가/경계국가 목록	특정 조세조약국과 기타 국가를 구별하고 있음.
핀란드	무협의국가/경계국가 목록	특정 조세조약국과 기타 국가를 구별하고 있음.
호주	무협의국가 목록	
뉴질랜드	무협의국가/협의국가 목록	
스페인	경계국가 목록	비목록국가 내의 피지배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비교세율 테스트에 의존함.
독일	경계국가 목록	실제는 무협의국가/협의국가 목록을 운영.
프랑스	경계국가 목록	실제는 무협의국가/협의국가 목록을 운영.
노르웨이		지정국가를 공표하지는 않으면서 경과세국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나라.

資料 : OECD, CFA, Working Party No. 2, CFC Legislation, 1995. 3, Paris.

경과세국 지정제도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납세자의 관점에서 보면 목록에 수록될 특정국가를 지정하는 것은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輕課稅國이나 非輕課稅國의 목록은 초기에 작성되어 계속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각국의 세

법에서 내국세의 회피와 과세이연의 가능성을 지닌 요소들을 모두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해당국가를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주된 교역상대국들만 고려하더라도 그 목록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공식적인 국가목록과 비공식적인 국가목록을 운영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 공식적인 목록은 입법절차를 거쳐야 수정이 가능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해당국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비공식적인 목록은 행정적인 발표만으로도 이행과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被支配 外國法人과 輕課稅國으로 지정된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법인등록지, 본사(head office) 소재지, 거주지 등에 근거하는데 이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피지배 외국법인과 경과세국의 관계를 법인등록을 기준으로 할 때 非輕課稅國으로 지정된 국가가 실제경영권 행사지(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경과세국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과세상의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非輕課稅國으로 지정된 국가가 원천지국(territorial basis)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輕課稅國 內에 외국고정사업장을 둔 被支配 外國法人을 설립함으로써 제도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실제납부세액비교법을 통해서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런 접근은 경과세국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이다²⁹⁾.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경과세국 지정제도 운영방법 중 경과세국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의 연계 속에서 경과세국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이 이에 해당하는 국

29) 영국의 무협외국가 목록은 피지배외국법인이 지정국가의 거주자이며 그 국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90%의 소득이 그 나라 안의 원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여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목록이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嫌疑國家(alack list country)가 아니라 無嫌疑國家(white list country)나 條件附 無嫌疑國家의 목록을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목록에 수록되는 국가들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다. 無嫌疑國家 목록에 수록되는 국가들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 많은 납세자들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과세권 축소의 우려가 있고 이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경우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는 못하나 課稅權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또 이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輕課稅國 판정을 위한 일반적인 정의 즉 실제 부담세액의 기준설정이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3. 被支配 外國法人과 國內納稅義務者

가. 持分比率 規定

外國法人에 대한 지배력 행사 여부의 가장 뚜렷하고 직접적인 기준은 우선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지분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하는 것이다. 50%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동 주주는 경영자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被支配 外國法人의 사업내용에 간여할 수 있으며 배당과 관련한 의사결정도 지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과세국관련 과세규정은 외국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납세자의 실질적인 영향(substantial influence)이 미치는 외국기업의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輕課稅國 관련 과세규정을 국내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국내 주주가 외국법인에 대하여 분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미처분 소득에 대해 이것이 귀속되는 국내 주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세요건으로 실질지배관계의 확인은 필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영향(substantial influence)이란 기업지분의 반 이상을 지배함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질적인 지배관계 규정(de facto control provision)으로 특정관계자가 지분의 40%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輕課稅國關聯 課稅制度에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가 상당히 例外的으로 회계연도 말에 국내 기업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輕課稅國의 외국법인의 경우 그를 지배하는 국내 기업의 과세시 분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호주,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은 국내거주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으로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대상을 규정함으로써 다소 보수적으로 실질적 지배관계 규정을 운영한다.

의사결정권 있는 주식의 소유 이외에 實質的 支配關係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보유주식의 가치, 분배가능소득 혹은 기업청산시 자산가치 등의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다³⁰⁾. 이러한 보충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는 어떤 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분배가능소득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동 주주는 국내의 세부담을 移延시킴으로써 실제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며 이 경우 동 주주는 실제적으로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으면서 법적인 지배관계를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피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지배 외국법인을 결정하는 내국인의 지분소유비율과 국내납세자를 판정하는 지분소유비율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거주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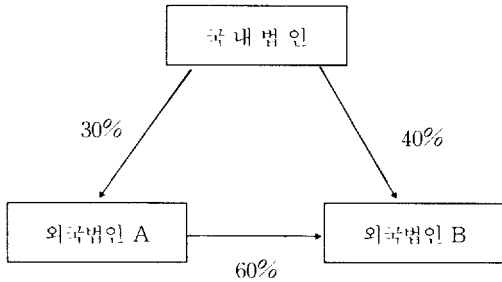
30) OECD, CFA, Working Party No. 2, *CFC Legislation*, 1995, 3, Paris, pp. 19~20.

50%의 지분을 소유하여 어떤 외국법인이 被支配 外國法人으로 판정되더라도 다수의 국내 거주자가 이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는 피지배 외국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국내 주주로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적용을 제한시키고 있다. 즉 호주,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 규정에 적용되는 국내 주주는 被支配 外國法人 자기자본의 최저 10%를 소유하여야 하나 일본은 1992년에 10%에서 5%로 바꾸었다. 독일과 노르웨이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모든 국내 주주들은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유지분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5명 이하의 국내 거주자, 스페인에서는 관련자인 국내 주주들 모두가 과세된다.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는 이유는 우선 소주주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분배에 대한 영향력이 약할 것이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그들의 未配當利潤을 계산해 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서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는 경우 당해 내국인 주주에게 외국법인의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특정 외국법인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50% 이상의 주식소유 기준 이외에 실질적 지배 기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납세의무 여부 판정기준은 주식소유 20%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다. 이는 외국법인의 20% 미만의 지분을 가지는 내국인 주주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차원에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특정 외국법인의 국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차원에서 소액지분의 국내주주를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한도를 20%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의 예에서도 5~10% 정도가 보통이며 우리나라도 10%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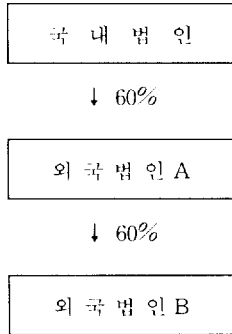
나. 間接的 所有關係(indirect ownership)

간접적인 지분소유관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輕課稅國 課稅制度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간접적 소유관계가 소수지분인 경우에 직접적 지분소유관계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 그림에서 국내법인은 외국법인 A의 주식 30%, 그리고 외국법인 B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다. 또 외국법인 A는 외국법인 B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國內法人은 외국법인 B에 대한 직접적 지분소유와 간접적 지분소유를 합하면 $58\% (=40\% + 30\% \times 60\%)$ 의 外國法人 B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되며 외국법인 B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법인 A의 나머지 주식 70%가 상관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다면 외국법인 A에 대한 소수지분 30%는 외국법인 B를 지배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므로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대한 지배력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자본지분만을 고려한다면 간접적 지분소유가 소수지분일지라도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적용을 받게 된다.

두번째는 국내법인이 한 외국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이 외국법인이 지배하는 다른 외국법인도 지배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위의 그림에서 국내법인은 외국법인 A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고 또 외국법인 A는 외국법인 B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인은 외국법인 B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36%(=60%×60%)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지분비율로 보아서는 輕課稅國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나 지배관계로 보아서는 국내법인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 B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배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분소유관계가 간접적인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이 50%가 넘는 경우와 동 기업에 대한 지배관계의 성립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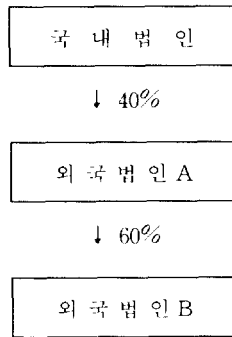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서는 간접적 소유를 직접적 소유와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어서 20% 이상의 간접적 지분소유도 경과세국관련 과세제도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서는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 31조에서 간접적 출자지분소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타방법인의 주식이 동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間接所有比率로 한다. 그리고 당해 주주인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

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이는 위의 두번째 예의 경우에 국내법인이 외국법인 B의 60%의 주식을 간접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동 시행령에서는 그외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유비율에 당해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인 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국내법인이 외국법인 A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인 40%를 소유하고 있고 외국법인 A는 외국법인 B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60%를 소유하는 경우에 국내법인은 외국법인 B의 주식의 24% ($=60\% \times 40\%$)를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 위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이러한 방식은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일방법인 사이에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이들 법인들이 주식 소유 관계를 통하여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관계의 성립이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과세대상 판정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上的 주

다. 構造的 支配關係(constructive ownership)

외국법인의 이윤분배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被支配 外國法人 규정 적용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생기는 다른 한 가지 문제는 한 지배 주주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여러 주주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배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다.

어떤 외국법인의 주식지분을 관계기업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관계기업의 지분소유를 합산할 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 이는 구조적 소유관계(constructive ownership rule)에 해당되며 輕課稅國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라. 支配關係의 基準時點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한 회계연도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지배관계가 성립하면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할 수가 있다. 뉴질랜드와 영국을 제외하고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회계연도내 종료일이 기준이다. 뉴질랜드는 주주지분을 1년 중 특정 4일에 조사하여 그 평균으로서 기준을 삼는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서는 내국인이 특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기간 중 특정한 날 즉 부가가치세법상(제9조 1항, 2항)의 거래시기(내국인이 특정 외국법인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輕課稅國 關聯 稅制는 이전가격세제나 과소자본세제의 경우와 같이 국내 주주와

특정 외국법인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실제로 그들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경과세국 관련 세제하에서는 국내 주주와 특정 외국법인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는 경우에 그들간의 지배관계 즉 지분비율관계를 판정할 아무런 기준시점도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경제원의 1996년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지 않은 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특수관계를 판정하기 위한 지배관계의 기준시점은 없는 상태이다.

대안으로서 회계연도 말을 기준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회계연도 말로 지배관계를 판단하고 기준시점을 단순화시키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 대해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이 節減되는 효과가 있으나 납세자가 이 제도를 회피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 단점이다.

4. 歸屬所得의 範圍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을 수동적 투자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과 능동적 사업활동으로부터의 소득(active business income)으로 나눌 수 있다.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기본목적은 수동적 소득(被支配 外國法人이 벌어들인 이자, 포트폴리오, 배당, 로열티과 임대료)에 대한 과세이연효과를 제거하는 것이며 사업활동소득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고려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소득구분법과 輕課稅國 指定制度는 귀속소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접근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순수한 소득구분법하에서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모든 특정소득은 被支配 外國法人 소재지가 輕課稅國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주주로 귀속된다. 순수한 경과세국 지정제도하에서는 輕課稅國 국가 내에 있는 被支配 外國法人이 거둬들인 모든

소득은 그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 성격에 상관없이 국내 주주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순수한 형태의 소득구분법이나 경과세국 지정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각 방법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두 가지 접근방법이 비슷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방식을 실무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輕課稅國 指定制度에서는 과세당국이 조세회피가 심각한 지정국가에 업무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被支配外國法人이 거둬들인 이자, 포트폴리오, 배당, 로열티과 임대료 등이 포함되는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으로 내국세를 회피하거나 과세이연을 위하여 輕課稅國 기업으로 쉽게 이전이 가능한 가장 유동적인 소득이다. 따라서 모든 수동적 소득은 경과세국 관련 지정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被支配 外國法人이 거둬들인 배당은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나 관련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비포트폴리오 배당(被支配 外國法人의 지분을 일정비율이상 소유한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active income). 거주지국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능동적 사업활동에 관련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면제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임대소득 등을 예외 없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5. 適用除外 規定

輕課稅國 課稅制度는 제도의 형태가 被支配 外國法人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성격에만 의존(소득구분법)하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 적용제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범주가 될 수 있다³¹⁾.

31) OECD, CFA, Working Party No. 2, *CFC Legislation*, 1995. 3, Paris, pp. 38~39.

- ① 일정비율 이상의 소득을 분배하는 被支配 外國法人에 대한 적용제외
- ② 특별한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被支配 外國法人에 대한 적용제외
- ③ 내국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被支配 外國法人에 대한 적용제외
- ④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被支配 外國法人에 대한 적용제외
- ⑤ 被支配 外國法人의 총소득이나 지분에 비례한 주주의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최소제한 규정)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목적이 외국법인이 배당을 유보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므로 일정비율 이상의 이익을 분배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을 제외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被支配 外國法人이 일정한 종류의 산업적·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被支配 外國法人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는 국내에서의 과세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종류, 외국법인의 진출형태, 소득의 성격 등에 따른다.

상장법인을 제외시키는 규정은 상장법인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나 정황으로 인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소제한규정은 일정액수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는 위의 5가지 중에서 두번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被支配 外國法人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즉 특정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의 배당간주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

비사업과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도 배당간주 과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6. 控除規定

공제와 관련한 문제 중 첫번째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은 소득의 경우처럼 국내납세자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노르웨이는 被支配 外國法人에 투자된 납세자의 자본에 최고한도까지 귀속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외국법인의 손실은 일반적으로 국내 주주의 소득과 연결회계되지 않으나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은 국내납세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고정사업장의 손실은 국내이윤과 연결회계되는 것이 타당하다.

두번째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이 동일 납세자에 의해 지배되는 다른 被支配 外國法人의 소득과 상쇄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뉴질랜드는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액을 동일 輕課稅國 내에서의 다른 被支配 外國法人 利潤과 상쇄시키는 것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OECD 국가들도 아직 손실상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미비가 OECD 국가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Ⅶ. 要約 및 結論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輕課稅國의 利用은 국제적 세무대책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인이며 합법적인 일이지만, 국민경제적 입장에서는 자국의 기업이 租稅回避 내지는 租稅節減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지나 사업등록지를 경과세국으로 옮기는 행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친다는 점과 稅源確保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볼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이러한 경과세국을 이용한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세제(tax haven legislation)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에 통과된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에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포함되어서 1997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상이한 과세제도로 인한 課稅移延의 효과에 대해서는 肯定的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가능하다. 과세이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과세이연으로 인하여 야기된 海外投資의 증가는 전세계소득(world income)을 증가시키고 마찬가지로 국내소득, 성장, 고용과 稅收增大效果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課稅移延은 모든 일반적인 투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한 없는 조세지원제도로써 해외투자를 誘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과세이연에 대한 평가 중에 가장 否定的인 논리는 과세이연이 자본수출의 中立性(capital export neutrality)을 해친다는 것이다. 즉 투자지역에 관계 없이 같은 有效稅率로 과세되어야만 조세지원제도로 인한 효율성 왜곡을 피할 수 있는데 과세이연으로 경제적 혜택이 가능한 경우 그외의 다른 조건이 비슷한 곳보다는 과세이연이 가능한 곳으로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多國籍企業의 경우 단순히 소득이 세율이 낮은 국가의 한 계열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꾸밈으로써 쉽게 租稅回避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과세이연을 否定的으로 평가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리이다.

다국적기업이 輕課稅國을 이용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기업 전체로서의 租稅負擔을 최소화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外換規制를 피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들은 경과세국에 지주회사, 판매회사, 금융회사, 해운회사, 은행, 신탁회사 등을 설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課稅移延을 통한 경과세국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효과는 원천지국의 세전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市場利子率이 낮을수록, 課稅移延期間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투자수익 유보율이 높을수록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1995년 우리나라 기업의 경과세국지역 투자금액이 총 3억 874만달러이므로 과세이연기간 5년 동안의 租稅回避 累積效果는 1,300만달러에서 8,600만달러에 이를 것이며 과세이연기간 10년 동안의 조세회피 누적효과는 2,200만달러에서 2억 3천만달러 사이로 추계할 수 있다.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움직임에는 극히 제한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분야는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에서 除外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는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租稅避難處로 정의하고 있고 또 국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위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제외 지역 혹은 조건부 제외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세무담비교법과 경과세국 지정제도가 혼용된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납세비용 및 징세비용의 절감과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가 채택하는 경과세국 지정제도적 요소 즉 무혐의국가의 지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의 세부담비교법적인 요소는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경과세국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稅負擔比較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所得區分法처럼 개별 투자자별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가 명목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비교법으로 바뀐다면 세율기준도 20% 정도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輕課稅國 指定制度는 두 가지의 경과세국 지정제도 운영방법 중 경과세국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의 연계속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國際租稅調整法 施行令에서 국세청장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목록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목록이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혐의국가나 조건부 무혐의국가의 목록을 국세청장이 指定·告示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목록에 수록되는 국가들과의 마찰의 소지도 없다. 목록에 수록되는 국가들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 많은 納稅者들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課稅權 縮小의 우려가 있고, 이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경우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는 못하나 과세권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며 일반적인 정의 즉, 實際 負擔稅額의 基準設定이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서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는 경우 당해 내국인 주주에게 외국법인의 귀속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특정 외국법인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50% 이상의 주식소유 기준 이외에 실질적 지배 기준(국세조정조세에관한법 시행령 제2조)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납세의무 여부 판정기준은 주식소유 20%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두 가지를 분리하고 있

다. 이는 외국법인의 20% 미만의 지분을 가지는 내국인 주주는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차원에서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특정 외국법인의 국내 납세의무자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차원에서 소액지분의 국내주주를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 한도를 20%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진다. 위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의 예에서도 5~10% 정도가 보통이며 우리나라도 10%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어떤 외국법인의 주식지분을 관계기업이 나누어서 소유하고 있는데 이 관계기업의 지분소유를 합산할 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 이는 구조적 소유관계에 해당되며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관련 과세제도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다.

지배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한 회계연도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지배관계가 성립하면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輕課稅國 關聯 課稅制度에서는 내국인이 특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그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기간 중 특정한 날 즉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과세국 관련 세제는 국내 주주와 특정 외국법인간의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실제로 그들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경과세국 관련 세제에는 국내 주주와 특정 외국법인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는 경우에 그들간의 지배관계 즉 지분비율관계를 판정할 아무런 기준시점도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재정경제원의 1996년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시기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지 않은 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특수관계를 판정하기 위한 지배관계

의 기준시점은 없는 상태이다.

대안으로서 회계연도 말을 기준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회계연도 말로 지배관계를 판단하고 기준시점을 단순화시키면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에게 납세비용과 징세비용을 節減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나 납세자가 이 제도를 회피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이 단점이다.

被支配 外國法人의 손실이 동일 납세자에 의해 지배되는 다른 피지배 외국법인의 所得과 相殺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과세국 관련 과세제도에서는 현재 이와 관련된 규정이 未備되어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OECD 국가들도 아직 손실상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미비가 OECD 국가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參 考 文 獻

- 姜東求, 『우리나라 法人稅制度的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國際課稅 分野를 中心으로－』, 韓國租稅研究院, 1995. 12.
- 金裕燦,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的 現況 및 改編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12.
- 李京根, 「國際租稅調整에 관한 法律의 制定趣旨 및 主要內容」, 『月刊租稅』, 1996. 4, pp. 67~82.
- 李庸燮, 『國際租稅』, 稅經社, 1996.
- 韓道淑·安鍾錫,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租稅政策의 改編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內部資料, 1996. 8. 20.
- Acheson, K. and C. Maule, "Risk and the Transfer Cost of a Tax Shelter," *Canadian Tax Journal(Revue Fiscale Canadienne)*, Vol. 42, No. 4, 1994, pp. 1082~1099.
- Altschuler, R., T. S. Newlon and W. C. Randolph, "Do Repatriation Taxes Matter? Evidence from the Tax Returns of U.S. Multinationals," NBER Working Paper No. 4667, 1994.
- Arnold, B. J., "The Taxation of CFC: An International Comparison," *Canadian Tax Paper*, No. 78, Toronto, 1986.
- Bebbington, K. J. and D. J. Hasseldine, "New Zeland: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1. 3, pp. 112~117.
- Cummins, J. G. and R. G. Hubbard, "The Tax Sensitiv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Firm-Level

- Panel Data," NBER Working Paper No. 4703, 1994.
- Grubert, H. and J. Slemrod, "The Effect of Taxes on Investment and Income Shifting to Puerto Rico," NBER Working Paper No. 4869, 1994.
- Harris, P. A., "Australia: New FIF Regim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3. 11, pp. 652~663.
- Hines, J. and R. James, "Credit and Feferral as International Investment Incentives," NBER Working Paper No. 4191, 1992.
- IBFD, *The Taxation of Companies in Europe*, Amsterdam, 1996.
- , *Taxes and Investment in Asia and the Pacific*, Amsterdam, 1996.
- Magnin, E. and E. Rautalahti., "Japan: Tax Haven and Foreign Tax Credit Rules: 1992 Amendments and Their Impact on Dutch Holding Companies,"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1993. 3, pp. 286~293.
- OECD, "Double Taxation Conventions and the Use of Base Companies,"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Evasion – Four Related Studies, Issues of International Taxation*, Paris, No. 1, 1987.
- ,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Paris, 1991.
- , Working Party No. 2,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Legislation*, 1995.
- Owens, J., "Globalisation: The Implications for Tax Policies,"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Recent Developments

in *International Taxation*, KIPF, 1996. 4, pp. 3~20.

Pendersen, B. M., "Denmark: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ion*, 1995. 10, pp. 315~318.

Viherkenttä, T., "Finland Enacts New Controlled Foreign Company Legislation," *Tax Notes International*, 1995. 1, pp. 695~696.